

평생교육체육과 - 2521

2012. 03. 06



The Good Edu-Partner
참 좋은 교육파트너, 인천교육청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2학년도 인천교육 기본방향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

실천
지표

꿈·보람·만족이 있는 감동교육 행복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

보람이
있는 교육

만족을
주는 교육

교육
시책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교육시책 1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책 2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교육시책 3

소통하며 신뢰
받는 교육행정
구현

교육시책 4

{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 ○ CONTENTS

I.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1

- 목표 및 기본 방향..... 3
- 중점 운영 과제..... 4
- 세부 추진 계획..... 5

II. 학교체육 관리 35

III. 보고서식..... 61

□ 부록

- 참고자료..... 71
- [교육과학기술부]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93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I.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 목표 및 기본 방향..... 3
 - 중점 운영 과제..... 4
 - 세부 추진 계획..... 5
 - 중점운영 1.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충실
 - 중점운영 2.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
 - 중점운영 3. 학교 운동부 선진화(엘리트체육)
 - 중점운영 4.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 (인적·물적 자원)

목표 및 기본 방향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통한 체·덕·지 전인교육 강화

중점운영 1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충실

-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
- 체육수업 평가방법 개선
- 초·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확대
- 체육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중점운영 2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신체활동 7530+ 운동' 전개
- 학생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중점운영 3

학교운동부의 선진화
(엘리트체육)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결손 보장
- 학생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근절
-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중점운영 4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인적·물적 자원)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대회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학생 체육활동 시설·환경 개선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체육관련 재능뱅크 홈페이지 활용

- ❖ 타 부처 및 관계기관, 단체 등 협조체제 강화
- ❖ 정책 홍보를 통한 인식 전환 및 학교현장의 정착
- ❖ 체육정책 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의견 수렴체제 구축

중점 운영 과제



중점운영 1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충실

1.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
2. 체육수업 평가방법 개선
3. 초·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 강사 지원 확대
4. 체육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중점운영 2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

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화 운영
3. '신체활동 7530+ 운동' 전개(주 5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중점운영 3

학교 운동부 선진화(엘리트체육)

1.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2. 공부하는 학생상 정립을 위한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3. 학생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근절
4.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중점운영 4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인적·물적 자원)

1.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대회지원위원회 구성·운영
2. 학생 체육활동 시설·환경 개선
3.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4. 체육관련 재능뱅크 홈페이지 활용

세부 추진 계획

중점운영 1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충실

1.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
2. 체육수업 평가방법 개선
3. 초·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 강사 지원 확대
4. 체육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1.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가. 즐거운 생활

1) 기본 방향

- 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활동에 대한 왕성한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른다.
- 나)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심미적인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2) 지도 중점

- 가)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 나)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다)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작품과 생활문화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끼기

3) 교육과정의 재구성

- 가) 주변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놀이와 창의적인 표현 및 감상활동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기
- 나) 학생의 특성 및 발달 정도,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기
- 다) 학습내용, 계절, 행사, 타 교과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기

4) 지도 방법 및 유의점

- 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생활과 관련된 즐거운 놀이 및 활동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한다.
- 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다) 짝 활동, 소집단 활동 등과 같이 서로 돕고 협동하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 라) 학생 개개인 모두에게 학습과 발표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되도록 한다.
- 마) 단원 구성 시 선정된 학습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내용 특성에 따라無理하게 통합되지 않도록 한다.
- 바) 교수·학습 과정에서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질문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킨다.
- 사)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실물 자료, 예화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도한다.

5) 평가

- 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활동으로 평가한다.
- 나) 평가는 결과보다는 학습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흥미, 태도, 창의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 다) 관찰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라) 평가가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학생 개개인의 이해 수준 파악, 수업 내용 및 방법의 선정, 학생의 학습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에 활용한다.
- 바) 개개인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나. 체육

1) 기본 방향

- 가)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게 한다.
- 나)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행하게 한다.
- 다) 주요 내용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라는 ‘신체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라)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 기초 체력 증진, 운동기본 능력과 표현 능력의 향상, 바람직한 운동 질서 및 규범의 형성, 활기찬 여가 생활 태도 형성을 강조한다.

2) 지도 중점

- 가)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과 운동 방법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태도 기르기
- 나) 도전의 대상을 이해하고 도전 활동에 필요한 운동규칙, 기능, 규범 등을 습득하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 다) 경쟁의 유형을 이해하고 경쟁 활동에 필요한 운동규칙, 기능, 규범 등을 습득하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 라) 신체 활동의 표현 요소를 이해하고 표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며 감상하기
- 마)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가 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수행 방법을 터득하며 실천할 수 있는 태도 기르기

3) 교육과정의 재구성

- 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 및 단위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에 맞게 재구성하기
- 나) 지역 사회의 체육 시설 및 공간을 고려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하기
- 다) 수업 내용의 특성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기 중 수업 시간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4) 지도 방법 및 유의점

- 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나) 신체 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다) 신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활동(신체 활동에 관한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 라) 교과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모형, 교수·학습 전략, 수업 기법, 교육 기자재 등을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활용한다.
- 마)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
 - 건강 활동 :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와 지속적인 격려 및 칭찬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도전 활동 : 놀이 또는 게임 중심으로 기본 움직임 능력을 지도한다.
 - 경쟁 활동 : 놀이 또는 게임 중심으로 지도하되,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표현 활동 : 동작 순서 습득보다는 다양한 표현 방법의 체험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고, 생활 주변의 소재나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모둠별로 표현하고 서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여가 활동 : 교내·외 체육 시설 및 수련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체적 여가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넓히고, 참여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평가

- 가)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육과 평가 계획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 나)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 학년 동안 균형 있게 실시하되, 각 영역에 따라 평가 비중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다) 교육과정 영역 내에서 균형성을 위해 특정 내용에 편중된 평가 및 단편적 기능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요소를 제시한다.
- 라) 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마) 평가는 교사의 평가뿐만 아니라, 상호 평가, 자기 평가 등 학생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바) 다양한 평가 방법(지필 평가, 체크리스트, 학습 일지, 보고서 등)을 활용한다.
- 사) 실기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수행 평가의 의미를 가진 실기 평가’를 비중 있게 실시한다.
- 아) 소집단 활동 시 개개인의 협력 태도도 평가한다.
- 자) 수업 목표 도달 정도의 점검뿐만 아니라 차시 수업에서의 향상 가능성 정도를 도모할 수 있는 피드백 기능으로 활용한다.
- 차)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정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 중학교 교육과정

가. 중학교 교육 목표

관련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현행	수정
<p>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p> <p>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p> <p>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p> <p>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p> <p>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p> <p>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p>	<p>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p> <p>가.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p> <p>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p> <p>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p> <p>라.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p>

<p>체육 가.기본방향</p> <p>나.지도중점 7) ICT활용·e-러닝 등과 같은 진보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활용한다.</p>	<p>체육 가.기본방향 6)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추가)</p> <p>나.지도중점 7) ICT활용·e-러닝 등과 같은 진보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활용한다. 8)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섯 가지 내용 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활동)을 한 학년 동안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추가)</p>
<p>다.교수-학습방법 1) 교수-학습 계획은 지도 내용과 학생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연간, 월간, 주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3) 심동적 영역이 주가 되는 수업을 전개 하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함께 지도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한다.</p>	<p>다.교수·학습방법 1) 교수·학습 계획은 지도 내용과 학생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연간, 월간, 주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3) 심동적 영역(삭제:이 주가 되는 수업을 전개 하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을 함께 지도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7) 신체 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내용 추가) 8) 신체 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내용 추가) 9) 교과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모형, 교수·학습 전략, 수업 기법, 교육 기자재 등을 선정하여 활용한다.(내용 추가)</p>
<p>라.평가 5) 평가 결과는 수업 방법을 보완하는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진로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6) 운동 기능 및 체력 평가는 한 학기당 학습한 내용 중에서 중학교 1, 2학년은 4개 종목 정도, 3학년은 3개 종목 정도를 선정하고 그 비율은 70% 정도로 한다. 7) 운동 지식 평가는 학기별로 지필 검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8) 운동 태도 평가는 전 수업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과 체계적인 기록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p>	<p>라.평가 5) 평가 결과는 수업 방법을 보완하는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진로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6)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활동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 학년 동안 균형 있게 실시하되, 각 영역에 따라 평가 비중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각 교육과정 영역 내에서 평가 내용의 균형성을 위해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실기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실제성과 종합능력 등을 중시하는 '수행 평가의 의미를 가진 실기 평가를 비중 있게 실시한다.</p>

2)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방안

가) 주당 2~3시간인 체육수업시수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수를 포함하여 주당 4시간씩 전 학기(6학기) 모두 편성

- 현행 체육 교과(272시간) 외에 「학교스포츠클럽」활동(136시간)을 필수 이수
- 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합하여 매학년 주당 4시간 운영

나) 「학교스포츠클럽」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동아리활동)으로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성격 : 축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수영, 댄스스포츠, 요가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

<중학교 체육수업 운영 예시>

구 분	현 행				→	개 정(안)			
	1	2	3	계		1	2	3	계
학 년									
체육 교과	3	3	2	8		3	3	2	8
학교스포츠클럽		1	1	2	4
체육수업 계	3	3	2	8		4	4	4	12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의 강조점

관련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현행	수정
<p>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은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p> <p>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인간 교육을 통해 서로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p> <p>나. 실천 위주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과 다양한 체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p> <p>다. (생략)</p> <p>라. 인천의 열과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의 귀중한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p>	<p>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은 ‘바른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p> <p>가.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인간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p> <p>나. 실천 위주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과 다양한 체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인천의 열과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의 귀중한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p>

마.(생략)	마.(현행과 같음)
바.(생략)	바.(현행과 같음)
사.(생략)	사.(현행과 같음)

2) 체육교과 중점 운영

<추가>	<p>가. 기본방향</p> <p>2)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행하는 사람, 즉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건강 및 체력, 스포츠 정신과 공동체 의식,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신체 문화 인식 등의 능력을 갖추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한다.</p>
<추가>	<p>나. 지도중점</p> <p>5) 체육과 교육내용은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이라는 ‘신체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지도하며, 이 교육적 가치들은 인문 사회적, 자연 과학적, 예술적 현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특성을 가진다.</p>
<p>다. 교수·학습 방법</p> <p>가) 일반학생은 체력, 기능 등의 차이로 인하여 수업참여 기회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수준별 집단으로 나누어 개별 교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다. 교수·학습 방법</p> <p>가) 일반학생이 체력, 기능 등의 차이로 인하여 수업참여 기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수준별 집단으로 나누어 개별 교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p> <p>7) 신체활동에 대한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p>
<추가>	<p>라. 평가</p> <p>8)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건강 활동, 도전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 의 진 영역을 대상으로 한 학년 동안 균형 있게 실시하되, 각 영역에 따라 평가의 비중을 달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3) 고등학교 체육 관련 과목 성적처리 시 유의 사항

- 체육 관련 과목은 편제(교과)를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 성적처리가 달라짐

- 체육 관련 과목에 대하여 편제(교과)를 ‘보통과목’으로 등록한 경우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처리됨
- 체육 관련 과목에 대하여 편제(교과)를 ‘전문과목’으로 등록한 경우 9등급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음

- 일부학교에서 체육실기(제7차 교육과정) 과목 등을 ‘보통과목’으로 등록하지 않고 ‘전문과목’으로 등록하여, 3등급이 아닌 9등급으로 처리됨

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 추진계획

1)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수(136시간) 확보 방안

- (‘12학년도) 학년별 주당 1~2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확보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실시
 -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수업 시수는 감축 불가
 -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기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허용
 -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등을 위해 블록타임(Block Time, 연속수업)으로 운영 가능
 - ※ 학교별 시간 운영 방안(예시)
 - (1, 2학년) 체육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학교스포츠클럽 2시간을 블록타임으로 운영
 - (3학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주당 2시간을 블록타임으로 운영
- (‘1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
 - 교과부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순증을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교사 증원 등 수급대책 수립

2)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도교사

-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교사는 체육교사 및 스포츠 강사 외에 일반 교과 교사도 지도 가능(‘학교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 ’11.4.5)
- 일반교사, 체육교사 외 추가 시수에 대해 스포츠강사 및 인건비 지원
- 체육재능뱅크, 명예체육교사, 대학생 스포츠 자원봉사 등 인력지원 확대 노력
 - 교육기관 기관장(교과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장)과 체육단체장(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대학총장, 지자체장 등 MOU 체결
 -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체육재능뱅크 구축·운영 ⇒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배너방 운영

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반 조직(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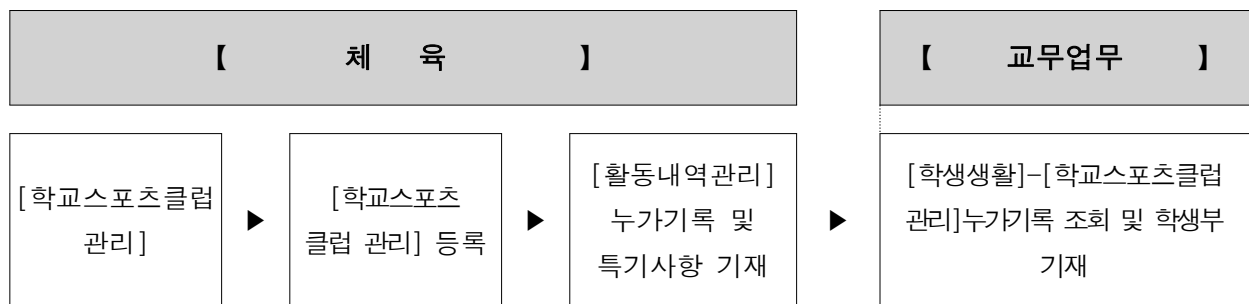
- (‘12. 2월) 학교에서는 ’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종목을 선정하여 강사수급, 시설활용 등 기본계획 수립
 - ’11년도 기 조직된 학교스포츠클럽을 참조하여 시수확보, 스포츠강사 배정 계획, 지역체육시설 이용 계획 등 포함
- (‘12. 3월) 학생들이 입학(개교)후 본인들의 2~3개 희망종목을 받아 배치
 - 학교에서 종목 선정은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되,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기

- 2011학년도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적용
- 2012학년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

②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누가기록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절차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은 [체육]-[학교스포츠클럽]란에 누가기록 및 기재
 -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란에 자동전송되며, 정규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시간과 자동 합산 기재
 -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 적용학년은 「특별활동상황-계발활동」란에 자동전송되며, 활동 시간은 계발활동 시간과 자동 합산 기재
- 정규수업시간에 하는 동아리활동과 계발활동시간과 구분하고,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구분해야 하기에 클럽별 특기사항란에 클럽명, 시간 기재 확인
-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 기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란과 「특별활동상황-계발활동」란을 동일하게 기재

③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란 기재 예시

【초등학교】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4	자율활동	54	학급의 반장(2010.03.01~2010.08.31)으로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선택하여 학급 협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단체 활동을 통하여 학급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고 단결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임. 용돈 기입장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알고 용돈을 모아 저축하는 생활을 실천함.(바둑부)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 바른 자세로 바둑을 두고, 바둑의 이론과 정석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수를 생각해 낼 수 있음.(농구점프볼클럽)(80시간) 포지션은 센터로 농구에 소질이 보이고, 패스와 드리블, 슈트 등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어, ○○교육지원청주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학교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열심히 참여함.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 보호의 방법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자연 보호 활동에 참여함. 친구들의 장래의 꿈이나 희망을 듣고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이해함.
	동아리활동	112	
	봉사활동	10	
	진로활동	6	

【중·고등학교】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동아리 활동	196	(영어회화반) 영어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어 영어표현에 자신이 있고, 특히 말하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보임. 영자신문반이 참여한 ○○교육청과 △△문화원이 연계 운영하는 국제수업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축구발리킥클럽)(162시간) 클럽의 주장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잘하는 미드필더이자 멀티플레이어로 3월~6월, 9월~11월 주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였고, 학교간 경기에 총 6회 참여 및 ○○교육지원청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열심히 활동함

○ 「특별활동상황-계발활동」란 기재 예시

【초등학교】

학년	특별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5	계발활동	112	(종이접기반) 크기가 다른 색종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창의적으로 잘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 전시함. (축구발리키클럽)(80시간) 클럽의 주장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잘하는 미드필더이자 멀티플레이어로 3월~6월, 9월~11월 주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였고, 학교간 경기에 총 6회 참여 및 ○○교육지원청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열심히 활동함

【중·고등학교】

학년	특별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3	계발활동	196	(영어회화반) 영어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어 영어표현에 자신이 있고, 특히 말하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보임. 영자신문반이 참여한 ○○교육청과 △△문화원이 연계 운영하는 국제수업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축구발리키클럽)(34시간) 클럽의 주장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잘하는 미드필더이자 멀티플레이어로 3월~6월, 9월~11월 주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였고, 학교간 경기에 총 6회 참여 및 ○○교육지원청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열심히 활동함

라.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종목별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및 강습 전개
- 스포츠강사(초·중·특수) 자격기준 :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취득

- ① 중등 체육2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②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 ③ 소속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 ④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 ⑤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⑥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 스포츠강사와 토요일 스포츠강사 비교

구 분	스포츠강사(초)	스포츠강사(중)	토요일 스포츠강사
배 치	초, 특수	중, 특수	초, 중, 고, 특수
목 표 (‘12)	3,587명 (초 3,430명, 특수 157명)	추후 확정	4,000명
역 할	체육수업 보조, 학교스포츠 클럽 지도, 기타 학교 체육 업무 지원 등 * 상근(常勤), 21시수/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및 대회 준비 * 시간제(Part Time)	주 5일제수업 관련 토요일 Sports Day 운영 (스포츠 강습, 대회 개최 지원) * 시간제(4시간/일 정도)
선 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장	학교장

마.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1) 체육교과 직무연수 실시

- 일시 : 2012. 8월중 실시
- 대상 : 초·중등 체육 담당 교사
- 내용 : 현장 적용이 용이한 실기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실시

2) 2012년 전국 학교체육연구대회

가) 운영 개요

- (1)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시·도교육청
- (2) 일 시 : 추후 추진계획 통보 예정
- (3) 대 상 : 전국 초·중·고 모든 교원 및 교육전문직
- (4) 분 야 : 학교체육교육 관련 연구 논문 및 수업사례발표

나) 운영 방침 : 이론보다는 일반학생과 학생선수 대상 실험·지도한 연구 논문과 재미있고 창의적인 체육수업 실천사례 중심 운영

내용	분과	연구논문	수업사례발표
제출형식		○ 논문 형식	○ 수업지도안, 동영상 등
연구 주제		○ 학교체육 주요정책 분야 연구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 학교운동부 선진화 ▪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 ▪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개발 연구 등	○ 체육수업방법 개선 ▪ 창의적인 체육수업 모델 개발·적용 ▪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 여학생 체육수업 활성화 사례 ▪ 체육수업 개선 인프라 구축 ▪ 체육수업을 통한 인성개발 사례 등
제출 자료		○ 연구보고서, 실적물	○ 연구보고서(연간지도계획, 3차시 내외 수업지도안)으로 1차 시·도 예선 심사-1차예선 통과자에 한하여 전국 대회출품 수업녹화 자료(3차 시분) 제출

다) 심사 및 시상

- (1) 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및 대한체육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
 - 지역교육청예선을 거쳐 시대회 1등급 수상자를 대상으로 전국대회 출품
 - 최종 출품 작품수의 40%내에서 1:2:3의 비율로 1, 2, 3등급 부여
 - (2) 심사내용 : 제출 편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 (3) 시상 : 1등급(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2·3등급(대한체육회장상)
-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입상실적은 연구가산점으로 평정됨

라) 세부 추진 일정

세부 내용	날짜	비고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관련 워크숍	2012. 4월중 실시	장소 추후공지
○ 전국대회 출품작 시·도 예선 (지원청별 심사)	2012. 9월 중	
○ 전국 대회 출품작 선정 심사	2012. 10월 말	교육부제출

마) 2011년 운영 실적

(1) 워크숍 운영

- (가) 일시: 2011. 4. 22(금) ~ 4. 23 (토)
- (나) 장소: 골든 스카이 리조트
- (다) 참석대상: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원
- (라) 참가 현황

연구논문 분과	총 응모편수	최종 출품편수	시·도대회 입상자 현황				전국대회 추천편수
			1등급	2등급	3등급	계	
초등학교	22	22	1	3	6	10	1
중·고등학교	45	45	2	4	10	16	2
계	67	67	3	7	16	26	3
수업사례발표 분과	총 응모편수	최종 출품편수	시·도대회 입상자 현황				전국대회 추천편수
			1등급	2등급	3등급	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8	18	1	2	4	7	1
계	18	18	1	2	4	7	1

중점운영 2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

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화 운영
3. '신체활동 7530+ 운동' 전개(주 5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리그제 활성화

가. 사업목적

- 입시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 및 건강 상태 악화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확산

나. 2011년 추진실적

- 가) 초·중·고 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가입율 70.6%
- 나)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70팀 70,000천원 지원
- 다) 지역교육지원청대회 실시 종목

지원청별	대회 실시 횟수	종 목
남부	12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구, 음악줄넘기 등
북부	15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피구, 소프트볼, 새천년국민체조, 음악줄넘기 등
동부	12	축구, 농구, 피구, 배드민턴, 탁구, 음악줄넘기
서부	16	축구, 농구, 피구, 배드민턴, 탁구, 핸드볼, 음악줄넘기
강화	6	축구, 탁구, 피구, 배드민턴 등
고등학교	9	축구, 농구, 피구, 배드민턴, 탁구, 음악줄넘기 등
계	70	

라)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현황

구분	종목	참가팀수	게임수	비고
지역·시교육청대회	70	804	764	

마) 2011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전적

- 핸드볼(계산여중 우승), 피구(용일초 우승, 상인천여중 우승), 줄넘기(인동초 대상, 선인중 은상, 서창중 대상, 학익고 대상, 신현고 금상), 소프트볼(부원여중 3위), 탁구(영선초 3위), 농구(제물포고 3위), 국민건강체조(부원여중 3위)

3) 향후 추진계획

- 2012년 초·중·고 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가입율 80% 이상 목표
-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100팀 100,000천원 지원 예정
- 초·중·고등학교 20개 종목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실시 예정

4) 대학생 체육재능기부 센터 활성화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체육재능기부 MOU체결
 - 교원자격증 취득시 4년간 60시간 교육봉사 필수 요건임을 감안하여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관련 운영요원으로 활용
- 시교육청 홈페이지 체육뱅크 배너방을 이용하여 인력 풀 구성
- 2012. 4월중 인근 대학과 MOU체결

5) 변경된 나이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 입력

구분	현재	변경	세 부 내 용
입력단위 (나이스관리)	시간	분	[나이스-학교스포츠클럽활동내역관리]에서 활동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 관리
최소 활동 시간	1시간	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최소 활동시간 이상만 입력 가능
시간환산 (학생부반영)	불필요	분(누적) ↓ 시간	학생부 반영시점까지 누적된 '분' 단위 활동시간의 총합을 학교급별 1시간 수업량(초: 40분, 중: 45분, 고: 50분)으로 나눈 후 그 몫을 학생부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삭하여 반영하지 않음
적용시기	-	2012 학년도	2012학년도 3월부터 적용

나.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전면 시행

1) 1999년도 개정된 학교신체검사 규칙 중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 기준

※ 학교신체검사규칙중 개정령 개정·공포(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2009. 5.22)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2009. 5.)에 따라 학생신체능력검사가 “학생건강체력평가”로 명칭 변경

2) 학생건강체력평가 → 신체활동처방 → 체육활동 전개(PAPS시스템으로 관리)

- ('09) 초5~6(초4, 선택), ('10) 중, ('11) 고 적용

※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의 브랜드명임

3) 「학교건강검사 규칙」(부령) 중 학생신체능력검사 관련 조항 개정('12. 2)

- 학생건강체력평가 종목 중 체지방률을 필수평가에서 제외하고, 2007년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상의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를 적용

-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선택평가(4종목)를 학교의 자율 선택·실시로 변경

※ 체질량지수(BMI ; Body Mass Index, kg/m^2) : 키, 몸무게로 정상, 경도비만, 고도비만 등 판정

※ 체지방률(% body fat) : 체지방측정기를 통해 체지방량, 근육량을 측정하고 비만 판정

현 행	개 정 안
<필수평가> (체지방) ① 체질량지수(BMI), ② 체지방률	<필수평가> (비만) ① 체질량지수(BMI), ② (삭제)
<선택평가> ① 비만평가, 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 ④ 자세평가 ※ 3년에(학교급별) 1회 이상 실시	<선택평가> ① 체지방률 평가, 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 ④ 자세평가 ※ 학교에서 자율 선택·실시

○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측정산식

① 체력평가 등급 비율(70%) : $\frac{(\text{초등학교} + \text{중학교}) 4\sim 5\text{등급 학생 수}}{\text{검사 인원 수}} \times 100$

② 향상도(30%) : $\frac{(\text{2011년 } 4\sim 5\text{등급 비율}) - (\text{2010년 } 4\sim 5\text{등급 비율})}{\text{2010년 } 4\sim 5\text{등급 비율}} \times 100$

▪ 향상도(증감비율)는 초·중학교만 평가, 고등학교는 '12년 평가부터 반영

- 학교정보 공시

▪ 4~5급 학생 수 : 학교정보공시('12. 4월 공시, '11.12.31 기준)

▪ 검사 인원 수 : 학교정보공시('12. 4월 공시, '11.12.31 기준)

다. 학생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1) 교내 봄·가을 체육대회 활성화

□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부족

※ 한국 학생의 언어적·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청소년의 핵심역량 국제비교, 여가부, 2010)

○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 신체활동 참여 기회 부족

※ 과도한 스트레스 →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 소통·감성 능력 약화

○ 대회 종목을 확대하고, 스포츠와 인성교육을 접목하여 운영

○ 신체활동량, 학생 참여율(재미), 사제동행, 부모동행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종목별 리그제를 통한 학급별, 학년별 대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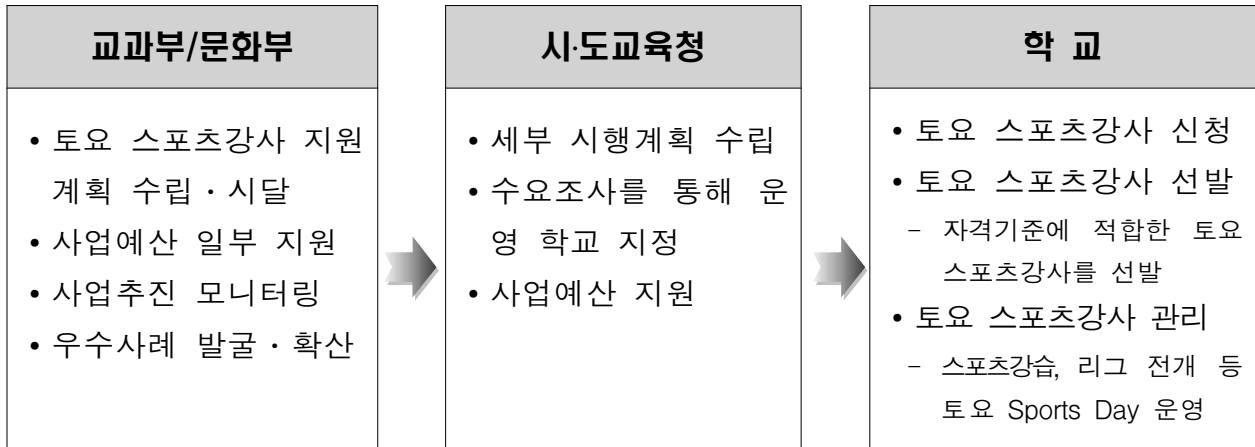
○ 교내 체육대회를 1일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그제를 통해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년별, 학급대항 등의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기 운영방법을 모색

2)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 및 학교스포츠 클럽 대항 교내 스포츠 리그 활성화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에 따른 스포츠강사 지원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특수학교(7개교)에 1명씩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인원을 초·중·고에 지원
- 역할 : 토요 학교스포츠클럽 강습, 토요 스포츠리그(대회) 운영, 기타 학생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선발 : 시교육청이 운영 학교를 지정하고 학교장이 선발
 -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자(16쪽 참조) 중에서 학교장이 강사선발 절차에 따라 채용하되,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체육 전공자 우선 채용

<사업추진 체계>



- 자격기준 :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
- 배치 : 학교별 1명 배정 하되 학급수에 따라 배치인원 조정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등 학교체육 주요 정책 사업 추진 우수교 우선 지원
- 근무 : 방학기간을 제외한 **토요일 4시간, 32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대회개최, 강습 등 필요시 최대 8시간까지 근무 가능
 - 지도수당은 **30천원/시간**으로 계산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급
-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현황

목표(명) (교과부 배정)	시·도계획(명)												
	기존			신규					전체				
	초	중	소계	초	중	고	특수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인천	9	5	14	28	17	10	7	62	37	131	10	7	185

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 체육수업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수업시간 확대
 -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여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와 수행평가 도구 개발 등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선정시 댄스, 뉴스포츠 등 여학생 선호 종목이 포함되도록 선정



중점운영 3

학교 운동부 선진화(엘리트체육)

1.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2. 공부하는 학생상 정립을 위한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3. 학생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근절
4.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1.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가. 학생선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공부하는 학생상 정립을 위한 초·중학교 학생선수 지원
- 엘리트스포츠의 활성화 및 학생선수 활동 인식 개선
- 학습 결손 방지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마련

2) 사업 개요

-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9개월
- 대상 : 인천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운동선수 (선수등록 필한자)
약 600명(예산 범위내)
※ 초등학교 지원 인원 미달시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모집
- 지원 내용 : 인터넷 화상강의 1과목 수강료 지원
- 선정과목 : ① 영어(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 회화 필요), ② 수학, ③ 국어, ④ 과학·사회 중 택1

3) 사업 내용

- 인천관내 운동선수 중 학교장 추천에 의해 1차 대상자 선정(120%선정)
- 출석을 저조 학생 강퇴 및 탈퇴 학생 대비 20% 예비 대기자 확보
- 학교당 최대 인원 20명 추천(20% 예비인원 포함, 최종 지원 대상 16명, 4명 예비 인원)
- 원격 화상 수업 담당 교사 1명 배정 후 1:1 또는 1:4 화상 수업 진행
- 학생선수들의 희망에 따라 교과목 선정(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4) 세부 사업 내용

가) 대상자 선정 방법

- (1) 학교장 및 운동부지도교사 추천
- (2) 4, 5, 6학년 학생선수 중 선수등록을 필한자로 중도 탈락을 하지 않을 선수로 선별하여 추천하되 저학년 우선
- (3) 초등학교 지원대상자 미달 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추천 가능(가급적 초등학생을 선 배정하되, 선수수급 및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지역교육청별로 추진 인원 결정)
- (4) 학교당 인원은 최대 20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시 저소득층 가정 우선
- (5) 가정에서 인터넷 화상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정
- (6) 각 해당 지역교육청별 인원 수 배정
- (7) 학생선수 관리는 학교에서 관리하되, 예산 집행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8) 사업 종료 후 수강 학생 명단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나) 운영 방법

- (1) 업체별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과목 중 택1
- (2) 1:1 또는 1:4 그룹 화상 강의로 해당 학생들과 수업 시간 결정
- (3) 컴퓨터 원격 화상 수업을 위한 필수 기자재 설치 및 상시 기술 지원
 - 원격 화상 수업 필수 기자재 제공(웹캠, 헤드셋)
 - 원격 화상 수업의 원활화를 위한 상시 기술 지원
- (4) 인터넷 담당교사가 출석 체크 및 학생 관리 특이사항을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매달 통보
- (5) 시합 출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업 진행을 못할 경우 예는 보강 수업 실시

라.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1)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13. 6. 1. 까지 취득(3년 유예))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1307(2012.2.7)호 관련 공문 참조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격 조건	경기지도자 2급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 임용
계약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통일
계약 해지	구체적 사례 명시 및 다면 평가기준 마련 등 재임용 심사
보수 규정	연봉 기준액 및 각종 수당(출장비, 초과근무수당, 특별근무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등)의 지급 명시
직무 명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 규정
근무 환경	근무여건 개선 및 학생선수 상담 등을 위한 별도의 사무 환경 마련

2)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3)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 2013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및 종목은 「인천광역시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관한규칙」에 따른다.<추후 세부 시행 계획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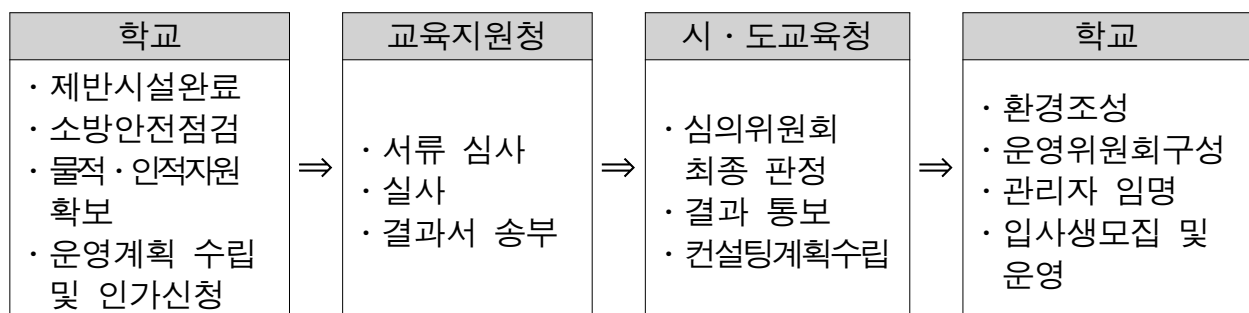
4) 학생선수 기숙 합숙소 운영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16523(2011.12.13호 관련 공문 참조)

① 목적

-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의 학습 공간, 숙식 제공, 휴식의 장 제공
- 학생선수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수기숙사의 건전한 문화 형성

② 학생선수 기숙사 인가 절차



③ 학생선수기숙사 인가 기준에 포함 사항

- 학습시설(책상, 의자, PC), 침구(침대), 휴게실, 식당, 주방, 소방시설, 비상 대피 공간, 샤워실(세면실), 화장실, 세탁실 등
- 기숙사 관리자 지정 및 별도 근무실
- 각종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

④ 운영위원회 조직 및 기능

○ 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조직

- 교장, 교감, 행정실장, 체육부장, 지역사회대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생선수 학부모대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운동부 감독 등

○ 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기능

- 기숙사 관리자 임명·보수 또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생 징계 및 기숙사 유지 관리
- 소방·화재 안전 점검 및 보완책 마련 등

⑤ 학교장 임무

- 선수기숙사 생활일지 점검
-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 화재, 가스, 전기안전 점검 법정 규정 준수
- 선수기숙사의 기반 시설 마련 등

⑥ 선수기숙사 관리자 임무

- 학생선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 안전지도 및 보건·위생 지도
- 외출, 외박 통제 및 급식, 청소지도 감독
- 화재 및 비상시 대비 교육
- 기숙사 일지 작성 등

중점운영 4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인적·물적 자원)

1.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대회지원위원회 구성·운영
2. 학생 체육활동 시설·환경 개선
3.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4. 체육관련 재능뱅크 홈페이지 활용

1. 인천광역시 대회지원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기 종목 등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 전환,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등에 따른 대회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관련 기관 협조 체제 구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각종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로 구성

제3조(역할) 위원회는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자문

1.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 전환 계획 수립
2.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계획 수립
3. 종목별 대회운영규정 마련
4. 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장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 협의
5. 대회 후원 및 홍보, 스포츠 마케팅 등 지원 방안 협의
6. 중앙 정부, 지자체, 체육회 및 교육청간 협조 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교육담당 장학관, 체육담당전문직, 인천광역시체육회 담당자, 학교체육 전문가 등으로 한다.
- 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 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지역대회지원위원회 및 시·지역대회지원위원회)

- ① 시교육청과 시·지역교육지원청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시교육청 대회지원위원회(이하 “시교육청 대회지원위원회”라 한다)와 시·지역교육지원청 대회지원위원회를 둔다.
- ② 시교육청대회지원위원회와 시·지역교육지원청 대회지원위원회는 각각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소속하에 설립·운영된다.
- ③ 그 밖에 시교육청 대회지원위원회와 지역교육지원청 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교육청 대회지원위원회 운영규정과 시·지역교육지원청 대회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체육 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

가. 기본방침

- 노후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 합숙소 및 학생성수 휴게실 화재 등 예방

나. 현황

1. 학교체육시설 노후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 노출
2. 학교운동부 합숙소를 생활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휴게실 및 탈의실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다. 추진방향

- 1) 합숙소 점검
 - 필요시 교육청, 관할 소방서와 합동점검 등 연 2회 정기 점검 실시
-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 학교급별로 체육장 시설 안전관리 방안 강구
 - 장마철, 해빙기, 방학 중 특별 안전 점검 실시
 - 각종 체육시설 안전사고 통계 수합 및 개선방안 마련
- 3)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노후연한 관련 기준마련 필요
 - 학교별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추진
- 4) 안전관리 관련 장학요원 배정 및 장학지도 철저
 - 체육시설 안전대책 우수사례 일반화
 - 체육장 안전관리에 대한 학생지도 생활화

3. 체육 재능 은행 운영 계획

가. 추진 배경

- 체육 관련 개인의 ‘재능은행 조직 및 재능 나눔’, 기업·체육단체 등의 다양한 ‘물적자원 기부’ 및 ‘프로그램 운영 기부’ 문화 확산 필요
- `12년 스포츠강사 전 초등학교 배치,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등 체육재능자 수요 급증으로 인력풀 구성 시급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무료 강습·스포츠리그 운영 등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프로그램 개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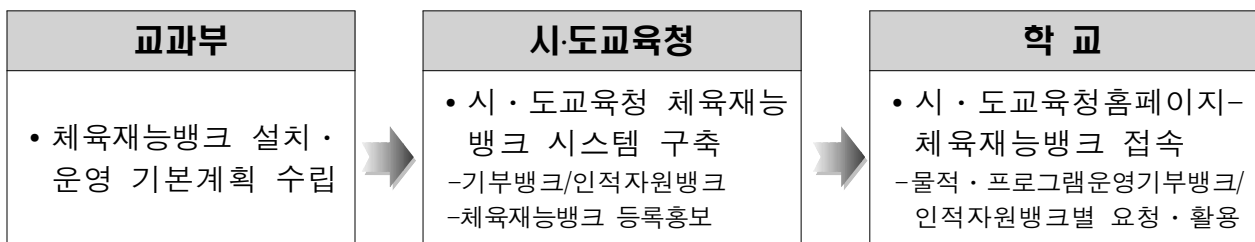
나. 추진 방향

- 「체육재능뱅크」에는 기부뱅크와 인적자원뱅크로 구분 설치
- 「기부뱅크」를 설치하여 기업·체육단체 등이 학교 또는 교육청과 MOU 등을 통한 기부 활성화
 - 체육시설 및 체육용품 등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적자원 기부 확대
 - 유명스포츠스타, 자원봉사자 등이 「기부뱅크」에 가입하여 자신의 스포츠 재능을 정기·부정기적 또는 1일 무료 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기부 참여 유도
- 「인적자원뱅크」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재능을 가진 인력풀 제공 및 활용

다. 추진 계획

1) 추진절차

- 시·도교육청별 홈페이지에 「체육재능뱅크」웹페이지 및 게시판을 구축하고,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체육재능 및 기부자원 DB 관리



2) 체육재능뱅크 웹페이지 구성·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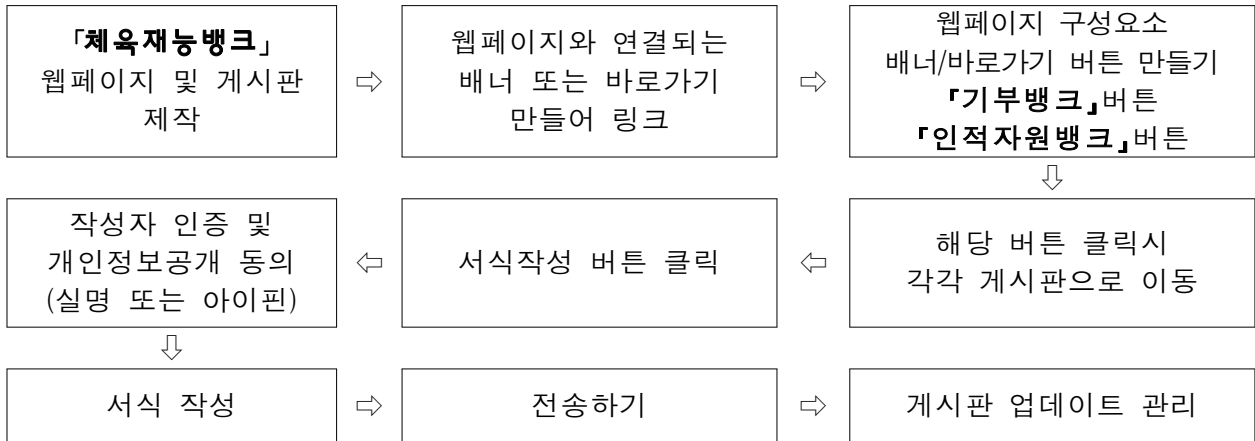
- 웹페이지 구성·운영 원칙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구축 원칙
 - 명칭은 「체육재능뱅크」로 통일
 - 이미지, 글씨체 및 크기는 시·도별로 구축
 - 기부뱅크와 인적자원뱅크 게시판 구분 운영
 - 등록 편이를 위해 라디오버튼이나 체크박스로 제작
 - 페이지는 최신 업데이트 된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



웹페이지 예시

- 내용 입력폼 작성은 교과부 제시 요소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재구성 가능
- 체육재능뱅크 등록자의 신원파악을 위해서 작성자의 인증(실명인증, 아이핀 중 선택) 절차 필수
- 체육재능뱅크 자료 탑재는 공개 원칙(본인동의 필수)

○ 웹페이지 제작 · 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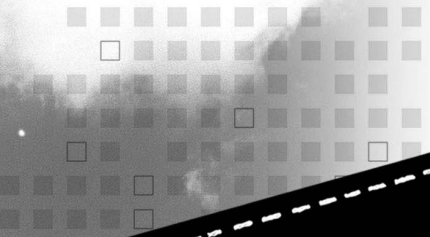


□ 체육재능뱅크 구성 내용

※ 첫화면 : 기부뱅크/인적자원뱅크 중 클릭

기부뱅크	인적자원뱅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 개인, 기업, 단체 - 선택클릭 ▪ (대표자명) ▪ (연락처) □-□-□ 직접입력 ▪ (기부종류) 체육시설, 체육용품, 스포츠강습, 스포츠키그운영, 기타 ▪ (기부세부내용) 직접입력 ▪ (기부희망대상) 초, 중, 고, 교육지원청, 교육청 - 선택클릭(이중 클릭 가능) ▪ (기부희망학교/기관) 직접입력 ▪ (기부날짜/기간) 달력-달력 ▪ (기타) 단체·기업 소개 등 파일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희망대상) 초등, 중등 ▪ (종류) 스포츠강사, 토요일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지도강사, 체육기간제교사, 기타 - 선택클릭 ▪ (이름) 직접입력 ▪ (특기종목) 직접입력 ▪ (연락처) □-□-□ 직접입력 ▪ (활동가능지역) (시·군·구) 1지망/2지망 ▪ (활동가능기간) 달력-달력 ▪ (활동가능시간) 직접입력 ※전일제, 방과후, 시간제 등 ▪ (국가공인자격) 직접입력 ※중등체육2급정교사, 초등2급정교사, 생활체육3급지도자 등 ▪ (기타) 파일찾기(기타 특이사항 탑재 선택 -개인정보보호 범위 내)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II.

학교 체육 관리

- 학교별 줄넘기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방안..... 37
- 교내 체육행사의 효율적 운영..... 37
- 학교체육지도 연구대회 운영..... 39
- 체육특기 지정학교 운영..... 44
- 전국(소년)체전 유공교직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 58
- 교육감기 초등학교 체조대회..... 58
- 교육감기 줄넘기대회..... 58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배 대회..... 59
- 인천광역시 ICT활용연구회 홈페이지 활용..... 59

학교별 줄넘기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방안

1. 줄넘기를 통한 학생체력 향상 방안 수립
2. 주 1회 줄넘기의 날 지정 운영
3. 교육감기 및 교육장기 줄넘기대회 개최
4. 교사 줄넘기 직무연수(15시간) 실시
5. 교사 줄넘기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6. 음악줄넘기 교재 개발
7. 줄넘기 급수제 운영
8.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으로 등록 의무화

● 줄넘기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계획 실천 현황 보고 : 2012.4.19(목)까지

<보고서식>

수신자 기호	학교명	줄넘기 급수제 운영	줄넘기의 날 운영 실시	교내 줄넘기 대회 개최	체육 수행평가 실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설	줄넘기 클럽활동 운영	줄넘기 동아리 운영	학교 예산 (만원)
(예) 기교1	(예) 제물포 고	(예) 전학년운영, 2,3학년운영	(예) 주1회,월1회, 학기별1회	(예) 6,11월, 학년별	(예) 4,6학년 1,2학기	(예) 40명, 개설하지 않음	(예) 2,3학년 3개반	(예) 3학년 두팀 40명	(예) 120만원

교내체육행사의 효율적 운영

1. 교내 체육대회의 활성화

- 가. 1인 1운동 종목별 경기대회와 교내 종합체육대회를 년 2회(봄, 가을)이 상 개최하여 학급별, 학년대항을 스포츠경기를 통해 학생들의 욕구 불만 해소와 협동심, 사회성, 배려심 등의 함양으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추진 계획 수립
- 나. 체육주간(4월 마지막 주간)과 체육의 날(10월 15일)이 속하는 달에는 운동회,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를 실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다. 특히 초등학교 운동회는 학생들이 동심을 펼 수 있는 축전이 되도록 하
되 사치와 낭비 등으로 운동회의 참뜻이 왜곡되지 않게 함

라. 교내체육대회 개최 시는 특히 다음 사항을 반영함

- 1) 전교생 참여 및 학급별, 학년별, 종목별 리그제 체육활동 강화
- 2) 학생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3) 1회성 행사가 아닌 스포츠활동의 생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사진행
- 4) 체육행사시 관내 학교를 연계하여 학교대항 체육대회 프로그램 권장
- 5) 교육과정과 관련 있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주
민 단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속종목과 문화행사를 포함
- 6)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활용

2. 자율과 참여의 체육특별활동 상설 운영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종목의 수준과 다양화한 프로그램 운영

나.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체육활동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다. 개인의 특기개발·신장을 위한 자율적 활동시간 상설운영 권장

라. 자원 인사 및 인접지 사회체육시설을 적극 활용

마. 1인 1운동 및 1교 1운동부 육성과 연계하여 운영

3. 자율적 학생 체육 클럽 대항전 실시 권장

가. 학생의 자율적 과외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단위, 특히 구 단위
의 클럽 대항전 실시를 권장함.

나. 학생 체육 클럽 대항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지원(경기지도, 시설, 용구지원 등)

4. 교내 체육대회 운영계획 보고 : 2012. 4. 19(목) 까지

- 서식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작성

학교체육지도 연구대회 운영

1. 목적

체육이론과 실기를 연구하여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시상을 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및 지도, 우수사례의 일반화로 체육지도의 내실화 및 각종대회 우수성적 거양을 목적으로 함

2. 학교체육지도 연구상 적용대회

- 가. 전국소년체육대회
- 나.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시범종목 제외)

3. 연구상의 종류 및 등급별 자격

등 급 별	자 격	비 고
1등급 (1.0)	전국소년체육대회(초·중)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1위에 입상한 선수(팀)의 지도교사	금메달
2등급 (0.75)	전국소년체육대회(초·중)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2위에 입상한 선수(팀)의 지도교사	은메달
3등급 (0.5)	전국소년체육대회(초·중)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3위에 입상한 선수(팀)의 지도교사	동메달

※ 개정 공무원승진규정(2007.7.25, 대통령령 제20068호)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이 개정됨(2009.01.01부터 시행)

4. 참가자격

인천광역시 재직교사로 당해 학교 운동부를 담당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동계대회 포함)에 참가자격을 획득한 팀(개인)의 지도교사

가. 참가절차

- 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선수명단과 지도교사명단 및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 제출(별지 1, 2, 3)

나. 추천자격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 1) 입상 종목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지정한 기일 내 미 제출자
- 2) 대회 참가 신청서에 지도교사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자
(선수등록과 인천광역시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참가 신청서에 반드시 지도교사 명기)

다. 시상 : 매년 12월중 실시

라. 학교체육 연구상 참가를 위한 제출 서류 양식

- 1) 지도연구 계획서(별지 1)
- 2) 학교체육연구상 대상자 명단(별지 2)
- 3) 학교체육연구상 추천서(별지 3)
- 4) 보고서 2부(보고서는 반드시 제본하여 제출)
- 5) 규격은 A4 용지로 좌철



<별지 1>

연구계획서

연구주제					
소 속	학 교	직 위	교 사	성 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내용 및 절 차 (요 약)					

2012년 월 일

제출인 지도교사 : (인)

<별지 2>

학교체육지도연구상 대상자 명단

순	대 상 자			수 상 구 분 (금상,은상,동상)	주 제	실 적				
	소속	직위	성명			년월일	대회명	종목	성별	입상실적

위와 같이 학교체육지도연구상 대상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3>

학교체육지도연구상 추천서

소 속	학 교	직 위	교 사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 번호					
최종출신 학 교	졸업년도 : 학 교 명 :	교 육 경 력	현임교 : 년 월 총경력 : 년 월(년 월)		
지도경력					
입상실적	년 월 일	대 회 명	종 목	세 부 종 목	입상실적
추천의견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지도연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12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체육특기 지정학교 운영

1. 특기학교 지정 운영

종목별 체육 특기학교는 특정학교 특정종목에 편중하여 지정함을 지양하고 과다한 특기종목의 지정으로 인한 형식적 운영을 방지해야 함

가. 특기학교 신청 방법

신청학교 → 지역교육지원청(초, 중) → 시교육청(고교) → 교육감(장) 승인 여부 협의 후 결정 → 신청학교로 승인 통보

※ 특기학교 신청시 운동부 운영계획서를 제출

※ 사전에 학교장 및 지역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협의 후 신청

나. 정책종목의 특기학교를 우선 지정하고 운동부지도자를 중점 배정

2. 운동부지도자 임용 및 관리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1307(2012.2.7)호 관련 공문 참조

가. 목적

- 1) 우수 지도자의 운동부 관리로 경기력 향상
- 2) 취약종목 실기지도의 내실화 모색
- 3) 합리적인 운동부지도자 임용 및 관리

나. 임용방법

- 1) 각 교육청의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운동부지도자 배정 종목을 협의 후 해당학교에 배정하여 **학교장이 임용하고 교육청에 보고**
- 2) 매년 3월1일자로 재(신규)임용과 특별한 사정(군 입대, 원에 의한 사직, 지도부족 및 물의를 일으킨 자)에 의하여 **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경우 반드시 소속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후 결정**
- 3) 임용 시(운동부지도자)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해당 경기단체의 자격 및 운동지도 소양 등을 문의하여 적합한 지도자를 임용한다.(필요시 추천서 첨부)
- 4) 매년 평가점수 60점 미만 3년 누적자는 재임용 불허

다. **임용서류** : 인사기록카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1부, 이력서 1부, 신원조사회보서 1부, 채용신체 검사서 1부(종합병원), **성범죄전력신원조회회보서 1부.**

아. **임용 보고** : 임용후 전자문서로 임용보고를 하고 첨부물은 관리카드만 제출 **관리카드 2부**(초, 중학교는 3부)를 작성하여 학교 1부, 시교육청 1부 (지역교육지원청 1부) 비치관리

<별지 1>

운동부 지도자 관리 카드

번호		학교명		소속: 교육청, 체육회, 자체			임용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종 목			
주소			핸드폰				
가족 관계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비고		
						기혼: ○·X	
						미혼: ○·X	
학 력	1. 고교:				신 장		
	2. 대학:				체 중		
	3. 대학원 이상:				최초임용일: 년 월 일		
					(현 근무지) 년 월 일		
경 력						자 격 증	
						1.	
						2.	
						3.	
특기사항							

3. 체육특기자 일반학생 전환관리

가. 체육특기자 일반학생 전환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 체육특기자의 일반학생 전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심사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설치한다.
- 3)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체육부장교사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체육특기자 일반학생 전환심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적교 일반 학생으로 전환한다.

- 1)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특기활동이 불가능한 자
- 2) 기타 사유가 발생한 자(기능부족, 부적응, 가정환경 등)

다. 심사시 필요한 서류

부상 및 질병자	기타 사유자(기능부족)
① 지도교사 의견서 1부	① 지도교사 의견서 1부
② 진단서 1부(종합병원 발행)	② 가맹경기단체장 의견서 1부
③ 학부모 동의서 1부	③ 학부모 동의서 1부
④ 체육특기자 포기원(본인)1부	④ 체육특기자 포기원(본인) 1부

라. 행정사항

- 1) 각급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를 일반학생으로 전환할 경우 관계서류를 작성 비치
- 2) 심사결과 일반 학생으로 전환될 경우 그 결과를 시교육청으로 보고할 것(초·중은 지역교육지원청)
- ※ 일반학생 전환 심사 후 교육청에는 명단만 보고하고, 구비서류는 학교에서 보관(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 3) 일반학생 전환 심사 시 담당 장학사와 사전 협의
- 4) 체육특기자의 일반학생 전환 심사는 입학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교육감(장)의 허가를 받아 전환할 수 있다.)

5) 체육특기자 현황보고 양식(매분기 말 5일 전 보고 : 3월, 6월, 9월, 12월)

학 교 명	종 목	체 육 특 기 자			분기 중 중도 탈락자		비 고
		학 년	입학자	현 원	인 원	사 유	

※ 변동사항이 있는 학교만 보고(초·중은 지역교육지원청)

마. 체육특기자 일반학생 전환자 보고

성 명	학년 반	생년월일	특기종목	사 유	비 고

※ 일반학생 전환 심사 결과 교육청에는 명단만 보고할 것(구비서류는 학교에서 보관)

※ 신입생은 입학 후 6개월 이내에는 일반학생으로 전환할 수 없음(단, 특별한 사안의 경우 소속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협의)

바. 체육특기자 일반학생 전환 심사대장

성 명	학년 반	생년월일	종목	사 유	비 고

※ 일반학생 전환 심사 후 인적사항만 보고(구비서류는 해당 학교에서 보관)

2012. . . .

위원장	학 교 장	○ ○ ○ (가, 부)	인
부위원장	교 감	○ ○ ○ (가, 부)	인
위 원	체 육 부 장	○ ○ ○ (가, 부)	인
위 원	○○ 부 장	○ ○ ○ (가, 부)	인
위 원	○○ 부 장	○ ○ ○ (가, 부)	인
위 원	지 도 교 사	○ ○ ○ (가, 부)	인
위 원	담 임 교 사	○ ○ ○ (가, 부)	인

4. 운동부 관리 운영

가. 대회출전 지도 · 감독

- 1)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은 학교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아래 기준에 의거 학교장 책임하에 참가토록 하고 출전계획 및 결과를 해당교육청(초·중) 및 시교육청(고)에 보고토록 함(단체종목 우승교, 준우승교는 대회 종료 즉시 현지에서 전언보고(초·중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032-420-8141, 8140 / 8279, Fax 420-8284(고등학교만 해당)

- 2) 해당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대회출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 3) 전국대회 출전 시 업무연락(보고) - 대회출전 1주일 전
- 4) 전국대회 출전 결과 보고 - 대회 현장 전언보고 후 서면보고

<별지 1>

업 무 연 락

- 수 신 :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
- 참 조 : 평생교육체육과장(학생건강안전과장)
- 제 목 : 전국대회 참가 계획 보고

구분	팩스
시	420-8284
남부	770-0131
북부	505-1631
동부	460-6639
서부	560-6669
강화	930-7758

학 교 명	
종 목	
대 회 명	
대 회 기 간	
장 소	
참 가 인 원	명 출전횟수 누계(회)
예 상 전 적	위

첨부 : 대진표 1부.

2012. . .

지도교사: 인

지도교사 핸드폰 :

지 도 자 핸드폰 :

<별지 2>

업 무 연 락

- 수 신 :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
- 참 조 : 평생교육체육과장(학생건강안전과장)
- 제 목 : 전국대회 참가 결과보고

구분	팩스
시	420-8284
남부	770-0131
북부	505-1631
동부	460-6639
서부	560-6669
강화	930-7758

학 교 명					
종 목	출전횟수 누계			회	
대 회 명					
대회기간					
장 소					
출전결과	지도교사		지도자		출전선수
전 적					
자체평가					

2012. . . .

○○ 학교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나. 대회기간

- 1) 대회기간은 7일 이내로 한하며, 다만 국제경기대회 및 방학 중 대회는 예외로 함
- 2) 본 대회기간이 초과되는 각종대회는 각급 학생선수에 출전을 일체 금지함

다. 대회출전 횟수

- 1) 전국규모대회 및 시·도 대회는 연간 각 3회 이내로 제한함. 다만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2)항의 대회는 출전할 수 있음
- 2) 출전 횟수로 간주하지 않는 대회
 - 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 나) 방학 중 대회
 - 다) 체육 중, 체육고 등 특수목적(체육계열)학교 대회 출전 횟수
 - 라) 국제경기대회

라. 대회출전규제

- 1)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 미만인자
 - 가) 1학년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적자는 참가자격 있음(입학 예정자는 제외)
 - 나)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체육특기자로서 관내 전학자는 단체경기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의 경우 전학년도 9월 30일 이후 전학한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경기종목 및 개인경기단체종목의 경우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 미만인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다) 체육특기자로서 최초 선수등록 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학 및 진학한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전년도 2학기 개학 전일,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당해 연도 1학기 개학 전일까지 입학했음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2) 대회 참가 종료 후 1개월 미만인 학생 단, 다음의 각 해당대회는 예외로 함
 - 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대회의 시·도 예선대회, 방학 중 대회
 - 나) 국제경기대회(선발대회 포함)
- 3) 시험기간 중이거나 시험개시 1주일 전

4) 육상과 빙상종목에 있어서 학교급별 제한 없이 출전이 가능한 각종 중장거리 대회에 있어서는 유망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가 무리하게 출전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무리를 초래하거나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거리 종목대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참가를 가능한 제한토록 함

마. 선수기록카드의 활용

1) 개인기록 경기종목에 있어서는 선수별 개인기록카드를 비치하고, 기능의 향상도를 점검하여 합리적 지도 관리를 도모하여야 함

2) 개인기록카드 예시(개인경기 및 기록경기)

○ 종목 : 성명 : (사진)

대 회 명	대 회 간	대 회 소	출 전 목	대 회 록	등 위	비 고	
						연 습 기 록	대 회 최 고 기 록

3) 대회출전 기록부 - 단체종목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등 위	비 고

바. 우수신인선수 발굴(지역교육지원청 해당)

운동에 소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해당 학교장이 추천체육특기자로 해당 교육청에 심사의뢰, 사전 담당 장학사와 협의

1) 구비서류

- 현 재적교 재학증명서 1부
- 심사표 1부
- 전출교 추천서 및 전입동의서 각 1부
- 학부모 동의서 및 본인각서 각 1부
- 가맹경기단체 추천서(체육회 경우) 1부

사. 일상훈련

- 1)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중 실시
- 2) 세밀한 연간계획서 작성으로 계획적인 활동
 - 주간, 월간, 연간, 동·하계훈련, 시합시기 등으로 훈련계획서 작성
 - 전국대회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보충 계획 등
- 3) 적절한 훈련량, 기간설정으로 수업결손 방지
- 4) 훈련 시 감독교사 및 지도자 입장지도 및 안전교육 철저

아. 합숙훈련(사전 승인 후 시행)

- 1) 학교합숙소(기숙사) 관리 위원회 구성 후 운영
- 2)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 하되, 교육청 승인사항(현장 방문 확인 점검)
- 3) 합리적이고 계획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마련
- 4) 적절한 합숙훈련 기간 및 운동량 설정
- 5) 무분별한 합숙소 운영 및 민원 야기 시 사인 발생 즉시 승인 취소

자. 전지훈련

- 1) 세밀한 계획과 효율성을 분석 후 실시
- 2) 원거리 훈련일 경우 종목별로 적합한 장소 물색 후 훈련 시행
- 3) 안전 및 과다한 훈련비 등을 감안 적절한 훈련기간 설정
- 4) 책임 있는 지도 관리자 임명과 선수관리 철저(식중독, 교통상해, 운동상해 등)
- 5) 학교장의 결재에 의한 시행 및 안전교육 철저

차. 인성·진로지도 강화 및 생활지도 철저

- 1) 경직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왜곡된 성격형성 방지
- 2)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욕구불만 해소 및 비행예방, 선수간 폭력 예방
- 3) 진로상담으로 운동부 활동의 보람과 긍지 고취
- 4) 사제동행으로 입장지도 철저
- 5) 인성 및 진로지도 교육시간 설정

카. 운동부 응원단 지도 철저

- 1) 사전지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양할 것이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학생부장 책임 하에 건전, 명량한 노래와 협동 단결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응원을 하고 지도교사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함
- 3) 심판 판정에 불복 항의하거나 심판 폭행 시 엄벌 및 출전정지

타. 학생 선수 해외출전 승인

- 1) 단체종목일 경우 방학 중 출전함을 원칙으로 함
- 2) 승인자 : 학교장
 - 가) 학생선수의 해외출전은 현장체험학습차원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실시하되, 출발 20일전 지역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 및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로 출전계획서 제출
 - 나) 귀국 후 1주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제출 : 별첨 참조
 - 다) 제출서류
 - 국외출전계획서 1부, 인솔책임 및 출전선수 명단 1부,
 - 학교장의견서 1부, 초청장 사본(있을 경우에만 첨부) 1부
- 3)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국외여행
 - 가) 관계법규 및 공문서(교육법시행령 제48조. 2001.1.29개정)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파.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 선수 이동시 안전관리 철저 이행

- 1) 기 시달된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문서번호 자치 11300-2(2001.01.02))을 숙지하여 학생선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시교육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참조)

하. 체육특기자 학비 감면 혜택 규정

1) 야구

- 가. 주요 검토 내용: 2011년도부터 야구 대회가 주말리그로 전환되면서 학비감면자의 적용 대상자가 축소되어 추가 범위 조정 필요
- 나. 검토 의견: 고교팀 예선 대회 1위(전국체전출전권)와 고교 주말리그 출전권을 동일한 성적으로 간주

2) 체육특기종목 지정교가 해체 및 변경 될 경우 전적교의 성적을 인정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하-1. 체육특기학생 전출 · 입 요청 방법

- <참고자료> 체육특기생 전입학 요청 서류

○○○ 학교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감(평생교육체육과장)

(경유)

제목 체육특기자 전입요청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및 2012 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전.현 입학 업무시행 지침(중등교육과- 호)관련입니다.

2. 상기 건에 의거 2012학년도 체육특기자(ooo 부)로 배정된 학생의 전입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연번	성명	학년	소속	생년월일	전학사유	희망학교
1	홍길동	1	ooo학교	2012.03.02	거주지이전	인천 oo학교

붙 임 : 1.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1부(비전자)

2. 학교장 전출동의서1부(비전자)

3. 학교장 전입동의서1부(비전자)

4. 재학증명서1부(비전자)

5. 학부모(학생)의견서1부(비전자)

6. 선수등록확인서1부(비전자)

7. 주민등록등본1부(비전자). 끝.

<별지 1>

학생 선수 단체 해외출전 계획서

()학교

1. 방문목적 :

2. 방문국 :

3. 방문기간 : 출국일자 년 월 일
 입국일자 년 월 일

4. 경비 : 총액(원)
 1인당경비(원)

5. 인 원 : 교사 명, 학생 명 계 명

6. 인솔책임자 : 직위 성명

7. 일정표

일 자	방 문 지 역	방 문 일 정	비고(숙박지, 전화)
제 ○ 일			
제 ○ 일			

※ 초·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로 보고

※ 고등학교 :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고

※ 출발 20일전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

<별지 2>

학생선수 단체 해외출전 귀국 보고서

()학교

1. 목적 :

2. 방문국 :

3. 기간 : 입국일자 년 월 일

4. 인원 : 교사 명, 학생 명 계 명

5. 인솔책임자 : 직위 성명

6. 방문일정 수행상황

일 자	방 문 지 역	방 문 일 정	비 고
제 ○ 일			
제 ○ 일			

※ 귀국 후 1주일 이내 초·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 보고

※ 귀국 후 1주일 이내 고등학교 :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고

전국(소년)체전 유공교직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

1. 체육교사 및 운동 지도교사의 사기진작 및 확고한 교육관 확립
2. 선진 교육현장 견학을 통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자세 확립
3. 2013년 1~2월 시행 예정
4. 유공교사 해외연수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장소 결정
5. 2011년 유공교사 연수 실적
 - 일시: 2012. 1. 11~2012. 1. 20(8박 10일)
 - 인원: 16명 (금메달실적자 11명, 은메달실적자 2명, 운동부지도자 1명)
 - 장소: 스페인, 포르투갈

교육감기 초등학교 체조대회

1. 기초종목의 저변확대 및 우수 신인선수 발굴
2. 어린이 신체의 균형적인 발달 도모
3. 체조를 통한 흥미 있는 체육수업 유도
4. 개최일시 : 2012년 5월 예정

교육감기 줄넘기대회

1.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1인 1종목 활성화
2. 줄넘기를 통한 평생체육의 기틀마련
3. 개최일시 : 2012년 11월 예정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배 대회

1. 기초종목의 저변확대 및 우수 신인선수 발굴, 평생 체육의 기틀 마련
2. 종목 : 수영, 육상, 줄넘기 등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3. 개최일시 : 2012년 6월 ~ 11월 중 개최 예정

인천광역시 ICT활용연구회 홈페이지 활용

1. 체육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식 정보화에 기여
2. 홈페이지 주소 : 인천 ICT활용 연구회(<http://cafe.daum.net/ultraPE>)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행정사항]

Ⅲ. 보고서식

서식 1. 체육교사 명단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명단(해당교).....	64
서식 2.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현황.....	65
서식 3. 고 2~3학년 체육교과 개설학교 현황.....	66
서식 4. 고등학교 2~3학년 체육교과 남·여별 선택 학생수 현황..	66
서식 5. 2012년 2월 체육특기자 졸업생 진로 현황.....	67
서식 6. 줄넘기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계획 실천 현황.....	67
서식 7. 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 현황.....	68
서식 8.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68
서식 9. 운동부 동·하계 훈련계획서.....	69
서식 10. 학생체육관 이용실적 현황.....	69
서식 11.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교육 운영결과.....	70

Ⅲ. 보고 서식

순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지정 서식	보고대상
1	체육교사 명단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명단 (해당교)	2012. 03. 12(월)	서식 1	초·중·고
2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현황	2012. 03. 12(월)	서식 2	
3	고 2~3학년 체육교과 개설학교 현황	2012. 03. 23(금)	서식 3	
4	고 2~3학년 체육교과 남·여별 선택 학생수 현황	2012. 03. 23(금)	서식 4	고등학교
5	2012년 2월 체육특기자 졸업생 진로 현황	2012. 03. 23(금)	서식 5	
6	졸남기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계획 실천 현황	2012. 04. 19(목)	서식 6	초·중·고
7	학교운동부합숙소 운영 현황	1차 : 2012. 03. 23(금) 2차 : 2012. 12. 07(금)	서식 7	
8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2012. 12. 07(금)	서식 8	
9	운동부 동·하계 훈련계획서	하계 : 2012. 07. 12(목) 동계 : 2012. 12. 14(금)	서식 9	
10	학생체육관 이용실적 현황	2012. 10. 05(금)	서식 10	
11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교육 운영 결과	초·중 : 2012.12.28(금) 고 : 2012.07.27(금)	서식 11	
입력 사항	학교 체육시설 현황	※ 각급학교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 별도의 서식 보고 생략 <정확한 자료 입력> - 5월 1일 기준으로 5월 6일까지 보고 - 단,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보고는 12월 8일까지 보건영역으로 보고		초·중·고 전체학교 (운동부 없는 학교도 입력)
	학교 운동부 현황			
	체육특기자 현황			
	체육담당교원 및 전문직 수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보고			

※ 입력사항은 각급학교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 <국회 및 시의회 감사 자료로 활용되니 기일 내 정확한 자료 입력>

※ 보고 시 반드시 엑셀 보고양식(xls)에 작성하여 기일 엄수 제출

※ 모든 보고사항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바람(단, 서식 11은 해당학교만 보고)

※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통계처리 후 보고기한 5일 이내 보고

<서식 1호>

체육교사 명단

()학교

학교 기호 및 학교 명	전화 번호	성명	성 별	출 신 교		생년 월일	최초 임용 일	재직교 부임일	특기 종목	현 담 당 종 목	자택 전화	핸드 폰	보직 교사
				고교	대학								
	교무실 (-) 체육실 (-) FAX ()												체육

※ 작성방법

1. 보직교사 란에 명시(예 : 체육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및 담임 표시 등)
2. 초등의 경우 체육부장 및 체육전담교사 기록
3. 현 담당종목에 운동부 담당 종목 기재
4. 연락처 정확히 기재(수정된 연락처 확인 요망)

<서식 1-1호>

학교운동부지도자 명단(해당교)

- ◆ 지도교사는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
- ◆ 운동부지도자는 자격증과 소속구분을 정확히 기재

순번	학교명	종목	지도교사	생년월일	성별	최종출신교		최초임용일	전화번호	자격증	구분
			지도자			고	대				
											체육회
											교육청
											자체

<서식 2호>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현황

2012학년도

()학교
(교, 명, 천원)

급별	학교명	운동부 육성종목	학생수 (초3~고3)	학생 선수수 (초3~고3)	학교운동부수 (팀수)			전임코치						
								교육청 지원			체육회 등 지원			계 (①+②)
					남	여	계	인원수 (①)	1인당월 (단가)	급여 총액	인원수 (②)	1인당월 (단가)	급여 총액	
초														
중														
고														
계														

일 반 코 치													
인원수	월급여액(만원)					월급여 재원				계약기간(년)			
	~99	100 ~149	150 ~199	200~	계	학교 예산	학부모 후원	기타	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계

※ 작성방법

1. ‘전임코치’는 교육청/체육회에서 배정, 예산 지원하는 코치를 말하며, 급여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
2. ‘일반코치’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지원(수익자 부담 포함)하는 코치를 말하며, 급여액은 “천원”단위로 기재

<서식 3호>

고 2~3학년 체육교과 개설학교 현황

2012학년도 ()고등학교

구분 학급 (학생수)	2학년		3학년	
	○학급, ○명		○학급, ○명	
개설여부	○,×		○,×	

※ 작성방법

2·3학년 체육교과(체육과 건강, 체육이론, 체육실기) 개설 여부를(○,×)로 기록

<서식 4호>

고 2~3학년 체육교과 남·여별 선택 학생수 현황

2012학년도 ()학교

수신자 기호	학교명	2학년						3학년					
		총학생수		선택학생수		비율		총학생수		선택학생수		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예) 기교1	(예) 제물포고												

※ 작성방법

1. 각 학년 체육교과(체육과 건강, 체육이론, 체육실기) 남·여별 선택 학생수를 기록
2. 복수교과 선택학생의 경우 1인으로 계산
3. 선택학생이 없으면 '0'으로 표시 < 모든 고등학교 제출 >

<서식 5호>

2012년 2월 체육특기자 졸업생 진로 현황

() 학교

수신자 기호	학교명	운동 부 육 종	졸업 생 수	남 자					여 자					비 고	
				계	대학· 고교· 중기 진학	실업프 로팀입 단	일반 계진 학	군 입 대	일반 취 업	기 타	계	대학· 고교 특기 진학	실업프 로팀입 단		일반 계진 학
예) 기 교 10 0	예) 박 진 교	탁구													육 상 00 고 4 명 00 고 2 명
		야구													
		육상													
		농구													
		계													

※ 고등학교 : 일반취업 - 아마추어 팀이나 프로 팀에 입단하지 않는 등 운동선수가 아닌 근로자 등으로 취업한 인원수를 기입

※ 지역교육지원청(초·중학교) : 중·고교진학, 비특기진학, 취업 등으로 구분

※ 비고란에는 종목별 진학한 학교와 인원수를 기록(초·중학교)

<서식 6호>

졸년기를 통한 기초체력 향상 계획 실천 현황

수신 자 기호	학교명	졸년기 급수제 운영	졸년기의 날 운영 실시	교내 졸년기 대회 개최	체 육 수 행 평 가 실 시	방 과 후 교 육 활 동 개 설	졸년기 클럽 활 동 운 영	졸년기 동아리 운 영	학교 예산 (만원)
(예) 기 교 1	(예) 체 물 포 교	(예) 전 학 년 운 영, 2,3학 년 운 영	(예) 주 1회, 월 1회, 학 기 별 1회	(예) 6,11 월, 학 년 별	(예) 4,6 학 년 1,2 학 기	(예) 40명, 개 설 하 지 않 음	(예) 2,3 학 년 3개 반	(예) 3학 년 두 팀 40 명	(예) 120 만 원

<서식 7호>

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 현황

2012학년도

()교육지원청

수신자 기호	학교명	운동부 육성 종목	합숙소 총수	사용중인 합숙소	시정조치한 운동부 수	시정 조치 내용
예) 기교 100	예) 박진고	탁구	10	x	x	시정조치사항 기재
		야구	30	o	o	점검표에 의거 점검
		육상	13	x	x	
		계	53			

※ 작성방법

1. ‘사용 중인 합숙소’는 소방기본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 중인 합숙소
2. 점검내용 : 소방, 환기(통풍), 위생, 안전 등 제반사항 점검
3. 1차보고 : '12년도 상반기(3. 25까지 보고) 점검 결과 포함
2차보고 : '12년도 하반기(12. 09까지 보고) 점검 결과 포함

<서식 8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2012학년도

()학교

수신자 기호	학교명	운동부 육성 종목	선수 수		회의 개최 횟수	사안(징계)처리 관련 회의개회 횟수	사안(징계)처리 내용
			남	여			
예) 기교 100	예) 박진고	탁구	10				
		야구	30				
		육상		13			
		계	43	13			

※ 작성방법

1.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운동부 육성학교에 꼭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2. 회의개최 횟수 : 학생선수보호 대책 협의, 진로·상담지도 등을 포함한 회의 개최 횟수
3. 전체 회의횟수 중 사안(징계)처리 관련 개최 횟수
4. 사안(징계)처리 내용 : 날짜, 처리내용을 간략히 기재
5. 1, 2학기 회의록 사본제출(반드시 2회 이상 실시)

<서식 9호>

운동부 동·하계 훈련계획서

()학교

학교명	종목	선수수	지도 교사 (핸드폰)	지도자 (핸드폰)	훈련 기간	합동훈련			훈련 기간	합숙 및 전지훈련			비고
						장 소	오 전	오 후		장 소	오 전	오 후	

※ 하계훈련계획서 : 2012. 07. 12(목)일까지 제출

※ 동계훈련계획서 : 2012. 12. 14일(금)까지 제출

<서식 10호>

학생체육관 이용실적 현황

()학교

연번	이용일시 (년, 월, 일)	이용기간	목 적	이 용 자 수			이 용 수 액	비고
				학 생	기 타	계		

※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연수, 강화체육관 - 해당학교에서 보고

※ 실적기간 : 2011. 10. 01 ~ 2012. 09. 30

<서식 11호>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교육 운영결과

()학교

학교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종목	수료인원	운영예산	비고(강사명)
						소속: 성명:
계						

2012년 월 일

○○○○○ 학교장(직인)

※ 운영결과보고: 각 학교별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 후 운영결과를 아래 양식에 의
거 교육청으로 보고(사업종료 후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FAX 제출)

※ 제출 마감일: 초·중학교 2012. 12. 28(금) 지역교육지원청

고등학교 2012. 07. 27(금)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부록 1.

참고자료

-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근절 계획(안)..... 73
-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 분석..... 76
-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결과 분석..... 78
- 2011학년도 인천광역시 운동부지도자 현황..... 79
- 2012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 80
-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85
- 운동부 지도자 관리 카드..... 86
- 2011학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지도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87
- 인천관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현황..... 88
-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팀 업무 분장표..... 90
- 지역교육지원청 체육팀 연락처..... 91

<참고자료-1>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근절 계획(안)**■ 배경**

- KBS 시사기획 “쌈”(‘08.2.11)에서 ‘스포츠계 성폭력 충격 고발’ 보도 이후, 네티즌들의 항의, 분노 빗발
- 시민단체, ‘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척결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08.2.15) - (성)폭력, 합숙소 실태조사 후 대책 수립, 성폭력 지도자 영구퇴출 등 건의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12)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 대책 마련 등 권고

■ 방침

- 학생선수의 행복추구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
- 학생선수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부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밝고 건전한 운동 분위기 조성
- 성폭력 신고센터 및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학교 엘리트스포츠의 이미지 쇄신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 체계 수립

■ 추진방향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학교별 선수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운영
- 성폭력 관련 신고센터 운영: 선수고충처리센터,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운영
- 운동부 관계자(학교장, 지도교사, 지도자, 학생선수 등)연수 강화
- 학생선수 상담의무화: 지도자, 지도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주기적 상담
- 운동부 지도자 관리 철저: 선수인권보호(폭력 예방)를 위한 의무 규정

■ 세부 운영 계획

1. 기구(제도)설치 운영

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설치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운동부 육성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설치 의무화
- 최소 학기별 1회 의무 개최로 운동부 운영실태 파악 및 보고 체계 유지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위반 시 시합 출전 및 자격 제한, 예산 상의 지원 중단 등 불이익 조치(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와 연계)
- 폭력 및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처벌 강화(감독, 코치, 학교장)

나. 가해자(지도자, 선수)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

-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및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에 명단 통보
- 3회 폭력행위 적발 시는 지도자 및 선수 모두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 퇴출(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대한체육회 명단 공유)

다. 「선수고충처리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교체육담당과에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설치·운영
- 시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 및 상담」코너에 배너 설치

라. 「학생선수 상담 의무」이행

- 선수와 가장 근거리에서 선수의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통해 운동선수 인권 관련 정책의 실효성 담보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건강 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체계 유지

2. 운동부 지도자 연수

- 가. 일시 : 2012. 4월중 개최-10:00(1차), 14:00(2차)

나. 장소 : 미정

다. 강사 : 학생선수 인권보호 전문 강사(국가인권위원회 전문 강사)

라. 대상 : 운동부 지도자(교육청코치, 체육회 코치, 자체코치 등)

마. 내용 : 학생선수 인권보호(성폭력 예방교육)

3.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교육

1) 기간 : 2012. 4. 11(월) ~ 2012. 12.30(금)

2) 대상 : 초·중·고 학생선수 전원

3) 운영방법

-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방과후, 주말 등)
- 중·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 30명 정도 단위로 학교급별, 남·여별, 유사종목군으로 나누어 실시함(국가인권위원회 지원)
- 강사지원 :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성폭력상담소 032) 424-3369, 3379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032) 446-1318, 1319
- 강사료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편성[초등학교 및 미 신청교(중·고등학교)]

※ 소요예산: 1일 2시간 기준

강사료: 70,000원(기본) + 30,000원(초과) = 100,000원

4) 운영결과보고 : 각 학교별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 후 운영결과를 아래 양식에 의거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사업종료 후 해당 교육청으로 FAX 제출)

※ 제출양식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교육 운영결과						
학교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종목	수료인원	운영예산	비고(강사명)
						소속:
						성명:
계						
2012년 월 일				○○○○○ 학교장(직인)		

<참고자료-2>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 분석

1. 행사 개요

- 일 시: 2011.5.28~2012.5.31
- 장 소: 경상남도 일원

2.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적

()은 제39회 메달획득 현황

금	은	동	계	비고
31(15)	36(28)	43(36)	110(79)	종합 6위

3. 교육지원청별 메달 현황

()은 제39회 메달획득 현황

구분	금			은			동			계		
	초	중	계	초	중	계	초	중	계	초	중	계
남 부	2	6	8	0	5	5	4	3	7	6	14	20
북 부	2	3	5	0	6	6	0	11	11	2	20	22
동 부		4	4	1	9	10	5	12	17	6	25	31
서 부	2	10	12	2	6	8	2	3	5	6	19	25
강 화	0	1	1	0	0	0	0	0	0	0	1	1
인천선발	0	1	1	0	7	7	1	2	3	1	10	11
계	6	25	31	3	33	36	12	31	43	21	89	110
총 계	31(15)			36(28)			43(36)			110(79)		

4. 다관왕 및 대회신기록 현황

종 목	성 명	소 속 교	전 적	비 고
양궁 50m, 개인종합, 단체종합	민 병 연	북인천중	3관왕	
양궁50m, 60m 사이클	이 소 담 정 재 희	신흥여중 계산중	2관왕 .	대회신기록 대회신기록
사이클(단체스프린트, 2km단체추발)	김석란, 문소진 장연희	방축중	2관왕	
수영	접영100,200m	박 진 영	작전중	2관왕
	접영100,200m	정 재 윤	동인천중	2관왕
	자유형200, 개인혼영	김 서 희	인천 은지초	2관왕
육상(800m, 1500m)	김 연 아	간석여중	2관왕	

5. 종합분석

가.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종합성적 상향 : <12위(금메달 15개) → 6위(금메달 31개)>

나. 기본종목(체조, 역도)의 다수 메달 종목 부진 - 체조: 32개 메달 중 은 3개 획득, 역도 48개 중 금 1, 은 2, 동 4개 획득

다. 기록 경기의 선전(양궁) : 2관왕 및 신기록 수립

라. 단체종목 중 핸드볼, 농구의 선전

마. 초등학교 메달획득 상향(2010년 2개 → 2011년 6개)

6. 우수 종목

가. 핸드볼: 금 2(남초부, 남중부), 농구: 금 2(남초부, 남중부)

나. 배구: 금 1(여초), 탁구: 은 1(여중부)

다. 야구: 남초, 탁구: 여초, 럭비: 남중, 하키: 남중 동메달

라. 양궁 : 금 5, 은 4, 동 1 (10개 획득)

마. 개인종목: 수영(금 6), 육상(금 3), 레슬링(금 3), 싸이클(금 3)

바. 4강 진출 단체종목 : 야구(1팀), 탁구(1팀), 럭비(1팀), 하키(1팀)

7. 부진 종목

가. 축구, 야구, 펜싱, 테니스, 정구, 소프트볼, 요트, 볼링

나. 기초종목인 체조 종목의 활성화 대안 필요

8. 개선점

가. 인구 280만 도시에 맞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인프라 구축 필요

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초, 중, 고 운동부 활성화 대책 보완

다. 초등학교 운동선수 수 확보를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 관심 필요

라. 생활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조기 발굴

마. 훈련시설의 확충이 시급(수영, 인라인롤러, 조정, 카누 등)

바. 운동부 지도자의 지속적 확대 배정 및 처우개선 추진 필요

사. 지도교사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보상책 강구

아. 1교 1종목 활성화 및 육성 지정 종목의 조정(교육지원청별/학교별)

자. 기본종목(육상, 수영, 체조)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강구 및 메달수가 많고, 다관왕 확보가 용이한 개인종목(레슬링, 양궁, 사격, 역도)의 지속적 육성지도 강화

차. 기록경기(육상, 수영) 종목의 선수 선발시 기준기록의 상향조정

카. 가맹경기단체와의 지속적 유대를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 강구

타.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 실시

파.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문제점 도출 평가회 개최

<참고자료-3>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결과 분석

1. 행사 개요

- 일 시: 2011. 10. 06(목) ~ 10. 12(수) <7일간>
- 장 소: 경기도 일원

2.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전적

4위	고등부	30,511	15	21	28	64	2010년 8위
6위	대학일반부	38,438	53	48	87	188	2010년 6위

3. 다관왕 현황

구분	종목	성명	소속	세부종목
3관왕	사이클	조선영	인천체고	500m독주, 단체스프린터 스프린트

4. 대회신기록 현황

일자	종목	성명	소속	세부종목	비고
10/07	양궁	전훈영	인일여고	70m	341점(은메달)

5. 종합분석

가. 예상목표 종합 7위에서 3단계 상승한 종합 4위 ※ 전국 6개 광역시중 1위 달성

나. 종합 1위 종목: 검도

다. 단체전 메달획득 종목: 검도(금), 야구(은), 정구 여고(은), 핸드볼 남고(동), 배구 남고(동), 핸드볼 남고(동), 럭비(동), 하키 남고(동)

라. 다관왕 현황: 사이클 3관왕(인천체고 조선영)

마. 신기록 수립: 양궁 여고(70m) 대회신기록 수립(인일여고 전훈영)

바. 체육고등학교의 선전

- 금9, 은6, 동10: 전년도(금4, 은5, 동15) 대비 금5(▲), 은1(▲), 동5(▼)

- 2011년도 획득한 총 64개 메달중 인천체고 24개 획득(인천시 고등부 메달획득의 40%에 해당)

사. 단체종목의 선전으로 고등부 종합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침

6. 우수종목 및 상승, 부진종목

가. 우수종목(10개 종목) : 야구, 정구, 럭비, 배구, 사이클, 복싱, 씨름, 검도, 양궁, 볼링

나. 부진종목(14개 종목) : 육상, 펜싱, 조정, 롤러, 체조, 탁구, 레슬링, 역도, 사격, 배드민턴, 요트, 근대5종, 카누, 보디빌딩

다. 유지종목(3개 종목) : 축구, 핸드볼, 하키

라. 0점 종목(3개 종목) : 수구, 배드민턴, 근대5종

마. 미 참가 종목(2개 종목) : 배드민턴(여), 배구(여)

<참고자료-4>

2011학년도 인천광역시 운동부지도자 현황

구분	초	인원 (명)	중	인원(명)	고	인원(명)	계		
전체 학교수	232교	176,010	131교	108,930	118교	111,135	481교 176,010명		
운동부육성교	94교 (40%)	1,173명 (0.7%)	95교 (72%)	1466명 (1.3%)	69교 (58%)	1,234명 (1.1%)	258교 (53.6%) 3,873명		
운동부육성팀	152팀		172팀		128팀		452팀		
운동부지도자배 치현황	75명 (남:31, 여:44)		94명 (남:61, 여:33)		56명 (남:46, 여:10)		225명 (49.8%) (남:138, 여:87)		
2012년 증원현황	총 9명				총 7명				2012년 20명 증원 합계: 245명
	남	북	동	서	남	북	동	서	
	2	3	3	1	1	2	2	3	

▶ 2012년 창단팀(4교) : 부개여고(배구), 해송고(배드민턴), 청라고(세팍타크로, 남), 송천고(태권도, 남)

<참고자료-5>

2012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

I.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1. 자격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일반코치)는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일반코치)의 임용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1) 정부(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체육전공 2급 정교사, 경기지도자 2급)을 소지한 자로 제한한다.(경기실적증명서 첨부)
- 2) 다만,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 자격미보유지도자는 '13.6.1. 까지 취득하고, 이후 임용되는 미자격 지도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임용하며, 임용 후 2년 이내에 자격 취득

2. 계약기간

- 1) 최초 임용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학교장과 계약한다.
- 2) 비정기 최초 임용은 계약일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단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명시) 학교장과 계약한다.

3. 임용방법

-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은 해당 학교에서 임용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 대상 적부 심사를 실시한 후 적격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 3)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자 중 적임자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한다.(임용 후 교육청에 보고)
-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동계약 갱신 시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체 임용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한다.

4. 임용서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

5. 대상종목

- 1) 정책종목(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등)
- 2) 동·하계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 3) 기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종목

6. 복무사항

- 1)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위 1)의 근거 규정과 질의회신·지침·편람 및 예규를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 3) 근무일은 365일로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무학교의 휴무일, 연차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 계약기간 중에 시합출전, 합동강화훈련, 합숙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 4)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는 체육부장(담당 교사) 및 학교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 6)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타 학교(기관)의 운동부 지도를 위한 순회근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 7)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출장(시합출전, 합동강화 훈련, 합숙 훈련 등) 및 초과근무 등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교육정보시스템(NEIS) 접속에 필요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개인정보를 인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도교육청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다.

※ 인사시스템의 등록방법은 NEIS[인사시스템-비공무원-기타직]에서 처리

7. 해임 및 재계약 제외

- 1) 금품 및 향응수수, 음성적 경비 각출, 회계처리 부적정, 관할 교육청 및 기타 단체로부터 징계 처분, (성)폭력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3년간 임용 제한하고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영구 제명)
- 2) 소속팀 해체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 한 경우
-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4)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체육인재육성재단/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 연합회 공동 주관)을 미이수 한 경우
※ '14년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 전원(전임, 일반코치)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 '15년도부터 3년 주기 이수
- 5)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가 결과 60점 이하, 3회(누적)에 해당하는 경우
- 6)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8. 근무성적 평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수행 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근무성적이 저조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근로재계약 심의 자료로 활용한다.

- 1) 평가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 2)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3) 평가방법
 - ①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근무평정자는 교감이 되며, 확인자는 학교장이 된다.
 - ③ 확인자는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확인해야하며, 평정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합당한 근거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평정자는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 행정실장(학교회계 관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하고, 합당한 근거에 따른 확인자의 재평정 요구 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 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평가는 지도실적, 복무자세, 선수관리 및 훈련장 안전 관리,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 ⑥ 평정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참고하여 지도실적, 복무자세, 선수관리 및 훈련장 안전관리,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 평정요소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 ⑦ 근무성적 평가결과 60점 이하, 3회(누적)인 경우 계약해지 및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 ⑧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⑨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9.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① 학생선수의 훈련지도 및 선수관리
- ② 각종 대회 준비 및 훈련계획서 작성·관리
- ③ 학생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관리
- ④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관리
- ⑤ 적정 학생선수 수 확보
- ⑥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II.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규정(예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효율적인 배정 및 운영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 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징계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도교육청 체육 담당 과장, 장학관이 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의 장, 체육단체 담당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 체육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시·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 학교명 : ()학교장 [직인]
- 종 목 :
- 성 명 :
- 평가기간 : 201. . ~ 201. . □ 임용일자 : 년 월 일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A	B	C	D
지도실적 (40점)	1. 전국(소년)체전에서 성과가 있는가?	30	20	10	0
	2. 종목별 전국 규모 대회나 교육감 및 관내 단체장 주관 대회에서 성과가 있는가?	10	7	4	1
복무 자세 (20점)	1. 소속 학교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4	3	2	1
	2. 소속 학교에서 부여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3.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지도에 임하고 있는가?	4	3	2	1
	4. 학교장 및 지도교사의 업무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5. 훈련계획 및 훈련일지를 성실히 작성 및 이행하고 있는가?	4	3	2	1
선수관리 · 훈련장 안전관리 (20점)	1. 선수의 개인별 특성과 경기력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4	3	2	1
	2. 과학적 훈련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4	3	2	1
	3.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선수의 건강상태 및 애로사항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4	3	2	1
	4.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4	3	2	1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학생선수들에게 안전교육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4	3	2	1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20점)	1.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운동부 내 (성)폭력 및 폭언 근절을 실천하고 있는가?	4	3	2	1
	2.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4	3	2	1
	3.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4	3	2	1
	4.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 대회 출전 여부 - 초, 중1)	4		1	
	5. 경기지도자 및 체육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4		1	
합계		100 점			

<비고>

- 1) 지도실적요인 1번 문항 - A: 전국(소년)체전 입상성적(30점), B: 8강 진출 및 시·도 대회 입상 실적(20점), C: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출전(10점), D: 전국(소년)체전 입상성적 없음(0)
- 2) 지도실적요인 2번 문항 - A: 3위 이상의 입상성적(10점), B: 8강 진출(7점), C: 16강 진출(4점), D: 16강 미만(1점)
- 3) 복무자세, 선수관리 및 훈련장 안전관리 요인의 하위문항 - A: 매우 그렇다(4점), B: 그렇다(3점), C: 그렇지 않다(2점), D: 매우 그렇지 않다(1점)
- 4)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요인 1~3번 문항 - A: 매우 그렇다(4점), B: 그렇다(3점), C: 그렇지 않다(2점), D: 매우 그렇지 않다(1점)

◆ 3.12일까지 보고 : (중간에 임용할 경우 임용 후 1주일 이내 해당 교육청으로 보고)

운동부 지도자 관리 카드

번호		학교명	소속 : 교육청, 체육회, 자체 임용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종목	
주소			핸드폰		
가족 관계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비고
					기혼:○·X 미혼:○·X
학력	1. 고교:				신장
	2. 대학:				체중
	3. 대학원 이상:				최초임용일: 년 월 일
					(현 근무지) 년 월 일
경력					자격증
					1.
					2.
					3.
특기사항					

<참고자료-6>

2011학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지도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기준(개인 및 개인단체 종목)		3,000	2,000	1,000
다관왕	2개 획득	5,000	3,000	1,500
	3개 획득	7,000	5,000	2,000
	상한액	7,000(대회신기록을 포함하여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체종목(구기종목)		6,000	4,000	2,000
대회신기록(최종기록)		1,000		
한국신기록(최종기록)		2,000		

▶ 성과상여금 대상자 : 성과상여금 지급 일 기준으로 현 소속교에 재직을 하고 있는 지도자 - 지급 기준일 시점에서 퇴직자는 지급안함.

※ 금, 은, 동으로 중복이 될 때는 은,동 실적의 50% 인정(예 : 금(3,000), 은(1,000), 동(500) 합: 4,500)

※ 성과상여금 지급액 상한선은 7,000천원으로 함

※ 연합팀의 경우는 단체종목기준으로 지급하되 선발 학생 수 기준 1/n 적용

※ 검도(고)는 단체종목으로 인정함

※ 단,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금액 조정은 은메달, 동메달 성과급 금액의 예산범위에서 조절함

<참고자료-7>

인천관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현황

시·군·구	학교명	연도	사업주체	사업 주관기관	조성 면적(㎡)	완공연월일 (예정)	운동장 종류 (인조, 천연)
동구	송현초	2006	교과부	학교	4,919	06.11.22	인조
연수구	옥련초	2006	교과부	학교	3,800	06.06.05	인조
서구	인천가좌여중	2006	학교	학교	3,065	07.01.03	인조
강화군	강화중	2006	공단, 지자체	학교	4,546	07.03.17	인조
서구	가정여중	2006	공단	학교	5,343	07.08.15	인조
계양구	성지초	2006	공단	학교	4,838	07.05.11	인조
남동구	석정여고	2007	교육청	학교	2,883	07.07.26	인조
남동구	석천초	2007	교과부	학교	2,421	07.11.30	인조
동구	대현중	2007	공단	학교	4,018	08.05.27	인조
계양구	신대초	2007	교과부	학교	4,884	07.12.27	인조
남구	인천기공	2008	교과부	학교	7,157	09.02.10	인조
남구	대화초	2007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학교	2,480	08.01.08	인조
부평구	구산초	2007	공단	학교	3,279	08.01.30	인조
부평구	갈월초	2008	교육청	학교	5,312	09.03.27	인조
남동구	서창초	2008	지자체 및 교육청	학교	4,424	08.12.26.	인조
남동고	미추홀학교	2008	교육청	학교	851	08.02.28	인조
동구	송림초	2008	지자체	학교	2,698	09.04.20	인조
남동구	장도초	2008	교과부	학교	2,535	08.12.30	인조
서구	당하초	2008	공단	학교	4,677	08.12.22	인조
연수구	청학중	2008	공단	학교	4,839	09.01.05	인조
계양구	부평초	2009	교과부	학교	6,111	09.09.23	인조
부평구	산곡북초	2009	교과부	학교	5,456	09.10.28	인조
남구	인주초	2009	교과부	학교	4,752	09.09.29	인조
남구	학익여고	2009	시교육청	학교	960	09.04.04	천연
연수구	함박초	2009	교과부	학교	3,584	09.10.30	인조
서구	검단중	2009	공단, 지자체	학교	4,107	09.10.20	인조
연수구	대건고	2009	공단	학교	2,630	10.07.30	인조
중구	인천여상	2009	공단	학교	3,998	09.10.13	인조

남동구	논현초	2009	공단, 지자체	학교	3,317	09.06.29	인조
부평구	부평동중	2009	지자체	학교	9,669	09.09.25	인조
남구	용정초	2010	공단	학교	1,928	10.09.27	인조
남동구	남촌초	2009	공단	학교	4,082	10.04.30	인조
서구	석남서초	2010	교과부	학교	4,846	10.12.18	인조
중구	신흥초	2010	교과부	학교	7,069	10.11.16	인조
부평구	영선초	2010	교과부	학교	3,595	11.1.20	마사토
남동구	남동중	2010	교과부, 지자체	학교	5,085	10.12.20	인조
강화군	강화고	2010	공단	학교	4,244	10.11.30	인조
중구	운서초	2010	국민체육진흥공단	학교	4,155	10.11.20	마사토
계양구	명현초	2010	공단	학교	2,830	10.11.08	인조
남동구	경원초	2010	문화부	학교	1,624	10.11.20	인조
용진군	백령중고	2011	교과부, 지자체	학교	11,200	11.11.30	인조
부평구	금마초	2011	교과부, 지자체	학교	3,055	11.11.30	인조
남동구	만수북초	2011	교과부, 지자체	학교	5,400	11.11.30	인조
계양구	안남초	2011	교과부, 지자체	학교	6,630	12.04.30	인조
서구	제물포중	2011	교과부, 지자체	학교	7,665	12.01.30	인조
서구	가림초	2011	공단	학교	2,675	11.12.27	인조
서구	단봉초	2011	공단	학교	3,641	11.12.29	인조
중구	영종국제물류고	2011	공단	학교	3,544	12.02.28	인조
남동구	인천남고	2011	공단	학교	4,214	12.04.30(예정)	인조
남구	전자마이스터고	2011	공단	학교	6,573	12년 명시이월	인조
계양구	계양중	2011	공단	학교	3,525	12년 명시이월	인조
강화군	강화초	2011	교과부, 지자체	학교	4,800	12년 명시이월	인조
강화군	강남중	2011	공단	학교	6,800	12년 명시이월	미정

<참고자료-8>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팀 업무 분장표

팀명	직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부담당자
체 육 교 육 팀	체육교육 팀장	연제곤	- 체육교육팀 업무 총괄	420-8279	장학사 박애희
	장학사	박애희	- 학교체육기본방향 수립·운영 - 중등 체육과교육과정 및 장학지도 업무 - 제93회 전국체육(제94회 동계)대회 업무 - 체육 유관기관(교과부, 문체부, 체육회)관련 업무 - 중등임용 체육 관련 업무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대한체육회) 업무 - 체육민원 처리업무 (운동선수고충처리센터, 국민신문고) - 상비군(육상·수영·체조) 운영 - 학교체육 연구·시범(창의경영)학교 운영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대회지원위원회업무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업무(서포터즈) - 체육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행정지원 -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 관련 업무 - 체육교과연구회 총괄	420-8141	장학사 김기춘
	장학사	김기춘	-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업무 - 체육특기 지정학교 운영 및 운동부지도자 관리 -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업무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업무 - 운동선수 및 지도자 민원 처리업무 - 전국 시·도 대항 대회(육상·수영·체조) 운영 - 학교체육지도 연구대회 업무 - 학교체육지도 유공교사 해외연수 업무 -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청렴 관련) - 중등체육관련 직무 연수 - 체육재능뱅크 운영 업무, 스포츠강사(중)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업무 - 표창 및 후원명칭(우등상 수여) 승인	420-8140	장학사 박애희
	장학사	김광식	- 초등 체육교육과정 - 국정과제 추진 업무 - 각종대회 사업 홍보 - 초등스포츠 강사 및 토요 스포츠강사 업무 - 학교스포츠클럽 업무 - 교육감기대회 운영(체조, 줄넘기) -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업무 - 초등체육관련 직무 연수 - 초등학교 운동선수 방과후 지원사업 -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사업 - 장애인 체육 관련 업무	420-8281	행정8급 한동엽
	행정8급	한동엽	- 체육교육팀 예산 및 업무 지원 -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 체육행사 및 각종대회 운영 지원 - 국감, 행감 자료 취합 - 각종 시설 통계 : 체육팀 주간, 월간 업무	420-8279	장학사 김광식

<참고자료-9>

지역교육지원청 체육팀 연락처

구 분	전화	팩스	담당장학사
북부교육지원청	5105-497	5051-163	김주호 010-3763-5334
동부교육지원청	4606-227	4606-339	육철민 010-8972-6452
서부교육지원청	5606-639	5606-669	한재근 010-3770-4916
남부교육지원청	7700-154	7700-131	안효삼 011-255-5302
강화교육지원청	9307-771	9307-758	손재윤 010-6312-2735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부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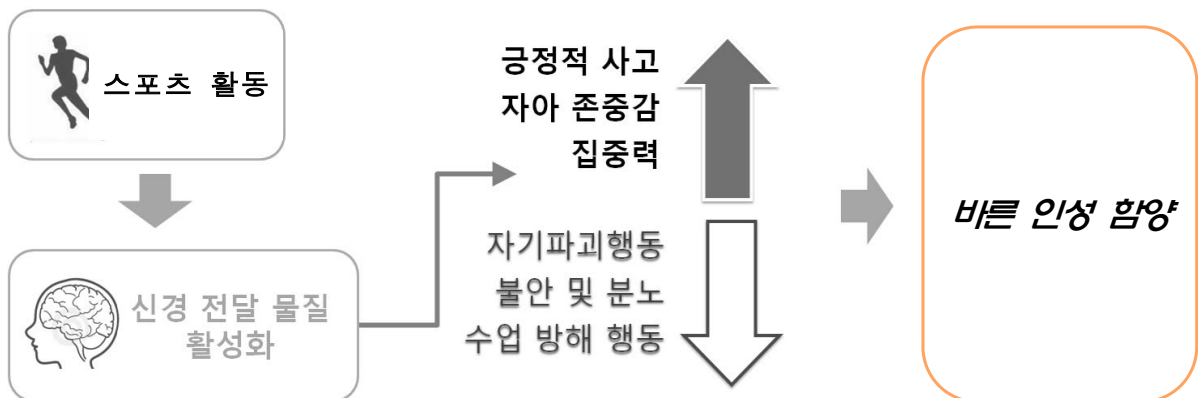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2012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1. 추진배경.....	95
2. 2011학년도 성과분석 및 내실화 방향.....	97
3. 정책 목표 추진 계획.....	101
4.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	102
5. 평가 및 홍보계획, 2012학년도 추진일정....	137

01 추진배경

□ (시대 흐름) 체육활동 강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바른 인성 함양 및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 중시는 전세계적 추세

- 체육활동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예절), 공동체의식(배려)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
 - 신체활동은 뇌 혈류량과 BDNF(신경 성장 유발 물질)를 증가시킴(존 레이티, 하버드대교수)
 - 규칙적 운동 참여시 연간 2조 8,000억원 의료비 절감 효과('07.10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 선진 각국(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
 - (일본) 모든 중·고교에 운동부(부활동)가 설치되어 방과후 교사의 지도 하에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중학생 64.9%, 고등학생 40.7%가 참여('09)
 - (호주)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 :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하루 전자매체 사용(컴퓨터 게임 등)은 2시간 이하로 제한
 - (미국) 중·고등학교 성적 4.0 만점의 평균 2.0 이상 획득, 최대 수강 신청 과목 수의 70%이상 수강시 대회 출전, 경기 출전으로 수업 불참 시 특별 과제 수행

- (우리나라 현실) 일반 학생들은 운동부족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학생 선수들은 운동만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문제 심화
 - 최근 학생들의 학습부담, TV시청 및 컴퓨터 게임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하여 비만은 증가하고 체력은 저하되고 있는 추세
 - 초·중·고 비만율 : 11.62%('06) → 11.24%('08) → 14.25%('10)
 - 체력등급('00~'09 비교) : '00년에 비해 1~2급이 12.3% 줄고, 4~5급은 15.2% 늘어남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 학교운동부 선진화 정책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 필요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 일정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을 증진하는 제도
- (추진방향)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을 확대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통한 체·덕·지를 겸비한 인재 육성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등록률 목표 : 27.4%('09) → 45.0%('11) → **50%**('12)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4~5등급 감소율 : 14.4%('11) → 13.0%('12)
 - 학생 신체활동7560+ 실천율 목표 : 14.2%('10) → 15.3%('11) → **18.0%**('12)
 - 학생 신체활동 7560+ : 학생들은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에 누적해서 6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준 이상의 강도로 운동해야 한다.

<‘12년도 주요 추진과제 및 목표>

‘12년도 주요 추진과제	성과 / 목표	
	‘11년	‘12년
① 중학교 체육수업시수(학교스포츠클럽 과목 포함) 확대	8시간/주 (3-3-2)	12시간/주 (4-4-4)
② 스포츠강사(초, 특수) 지원	1,500명	3,587명
③ 토요일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300명	4,000명(중 3,000여명)
④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중)	0	3,000개 클럽
⑤ 중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136팀	7,120팀(178개청×5종목×8팀)
⑥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확대	10개 종목	30개 종목
⑦ 스포츠 스타 1,000명을 명예체육교사(체육재능기부)로 위촉	90명 (90개교)	1,000명(1,000개교)
⑧ 학교체육 활성화 창의경영학교를 50개교로 확대	30개교	50개교

02 2011학년도 성과분석 및 내실화 방향

1.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그간의 성과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제고 및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시행

○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청 등록률 제고

• ('07) 8.1% → ('08) 17.1% → ('09) 27.4% → ('10) 37.6% → ('11) 45.0%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초·중·고 전면 실시 및 학생 신체 활동 7560+(주5일 하루 60분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증가

• 신체활동 7560+ 실천율 : ('10) 14.2%(초, 중) → ('11) 15.3%(초 25.0%, 중 12.4%, 고 11.7%)

* 학생 신체활동 7560+ : 학생들은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에 누적해서 6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준 이상의 강도로 운동해야 한다.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토요일 Sports Day 운영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08) 823명 → ('09) 887명 → ('10) 1,223명 → ('11) 1,500명

○ 토요일 Sports Day 운영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11년 300명)

• 토요일 Sports Day(토요일은 운동하는 날) : 다양한 스포츠 강습 및 스포츠 리그 전개

□ 「학교체육 진흥법」입법('12.1.26. 공포)

현장의 소리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제고 등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실제 스포츠 활동 참여시간 확대 등 질적 제고 필요

현장 착근 방향

- 교육지원청(178개청) 단위 스포츠 리그 확대
 - 중('12) → 초·중('13) → 초·중·고('14)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및 명예 체육교사(체육재능기부) 위촉
 - 스포츠강사 : ('11) 1,500명(초) → ('12) 2,963명(초, 특수)
 - 토요 스포츠강사(초, 중, 고, 특수) : ('11) 300명 → ('12) 4,000명(중 3,000여명)
 - 명예 체육교사 위촉 : ('11) 90명 → ('12) 1,000명

2.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운동부 선진화

그간의 성과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및 최저학력기준 미달율(%) 감소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 최저학력기준 설정(전교생 평균성적 대비) : (초) 50%, (중) 40%, 고(30%)
 - '11년 초(4~6), '12년 중1, '13년 중2, ... '17년 고3까지 점진적 확대 적용
 -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 미달율(%) : 12.8%('10)→8.8%('11) * 4% 감소
- 학교축구('09~), 고교야구(~'11) 주말리그 전환
 - 공부와 운동을 병행토록 축구, 야구를 주말리그로 전환
 - 정규수업 후 운동하고 주말에 대회 참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문화 정착
 - 축구팀 증가 : ('08) 523팀→('09) 576팀→('10) 609팀→('11) 627팀→('12) 678팀

현장의 소리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 부담 등 사교육비 가중
 - 학부모 부담 : 구기종목 중심으로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경비, 용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에 1인당 약 50~200만원/월 부담(연간 약 7,690억원 추정)
-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시 입상실적 위주 선발 및 스카우트 비리 상존

현장 착근 방향

-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기회 확대,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노력
 - 연수 확대 : 교육청 외 문화부(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연수프로그램 개설 확대
 -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개정 및 제도권 내 편입(일반코치 → 전임코치) 등 처우개선 노력
-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선 방안 마련('12. 2)
 - 시·도교육청별 관리 규정 분석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 개선 방안 마련
-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개선 노력
 - 정책연구('11.5~12, 체육과학연구원, 한태룡 선임연구원) 결과 분석 및 대교협,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자율적 개선 노력

3.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그간의 성과

- 초·중·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체육활동 여건 개선
 - 초·중·고 11,491개교 중 2,083개교(18.1%)에 운동장 등 조성('11. 8월)
 - 인조 1,479개교(12.9%), 천연 547개교(4.7%), 흙 57개교(0.5%)
- 체육관 등 설치 확대 다양한 스포츠활동 전개 등 여건 개선
 - 체육관(전용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수영장 등 설치 증가
 - 전용 체육관 : ('10) 694개교 → ('11) 906개교
 - 강당 겸용 체육관 : ('10) 5,536개교 → ('11) 5,981개교
 - 수영장 : ('10) 137개교 → ('11) 176개교
 - 야간조명등 : ('10) 2,472개교 → ('11) 3,621개교

현장의 소리

-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축구, 농구경기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야구, 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성 제기
-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여건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후(사용 연한 7~8년)에 따른 재포설 등 대책 마련 필요
- 야간조명등 설치가 3,621개교(31.5%, '11. 8월 기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후 운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한계

현장 착근 방향

- 학교운동장 조성시 야구, 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토록 설계시 반영
- 인조잔디운동장 노후도 실태조사('11.5~12, 체육과학연구원, 유지곤 연구원) 등 정책연구를 통해 재포설 방안 등 대책 마련 필요('12년)
- 야간조명등 설치 확대로 방과후 체육활동 여건 개선
 - '11~'15년까지 총 1,000개교 설치(교육청 : 지자체가 5 : 5 예산 분담)



03 정책 목표 추진 계획

추진 목표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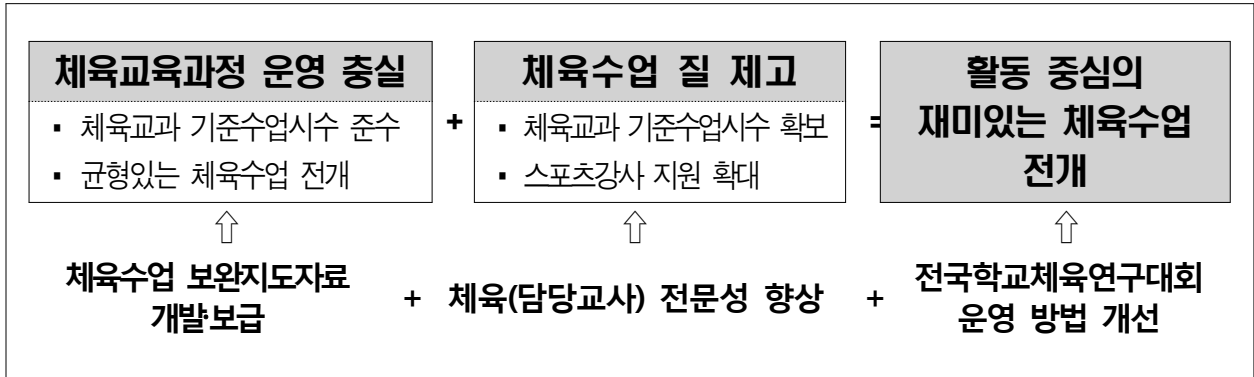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 45.0%('11) → 50%('12) - 인천: 80%

*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 15.3%('11) → 18%('12)

6대 중점과제	16대 실행과제
1. 교과 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1-1. 체육수업시수 확대 및 체육수업 질 제고 1-2.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및 연구대회 활성화 1-3.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2-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2-2.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강화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 내실 운영	3-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3-2.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3-3.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4-1.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체육재능기부 확대 4-2.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4-3.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교직원 등 포상
5. 학교운동부 선진화 (엘리트 체육)	5-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5-2.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 5-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6. 법·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6-1.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6-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원 강화 6-3. 학생 체육활동 시설·환경 개선

04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

1.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1-1 체육수업시수 확대 및 체육수업 질 제고

□ 체육수업시수 확대

- (방향) 주당 2~3시간인 체육수업시수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수를 포함하여 주당 4시간씩 전 학기(6학기) 모두 편성
 - 현행 체육 교과(272시간) 외에 「학교스포츠클럽」활동(136시간)을 필수 이수
 - 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합하여 매학년 주당 4시간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동아리활동)으로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성격 : 축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수영, 댄스 스포츠, 요가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

<중학교 체육수업 운영 예시 >

구 분	현 행				→	개 정(안)			
	1	2	3	계		1	2	3	계
학 년									
체육 교과	3	3	2	8		3	3	2	8
학교스포츠클럽	·	·	·	·		1	1	2	4
체육수업 계	3	3	2	8		4	4	4	12

○ (시수확보 방안)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수(136시간) 확보 방안

- ('12학년도) 학년별 주당 1~2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확보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실시**

*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수업 시수는 감축 불가(2011학년도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사항 안내, '10.9.30)

-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기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허용
-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등을 위해 블록타임(Block Time, 연속수업)으로 운영 가능

※ 학교별 시간 운영 방안(예시)

- (1, 2학년) 체육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학교스포츠클럽 2시간을 블록타임으로 운영

- (3학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주당 2시간을 블록타임으로 운영

☞ 참고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형 참조

- ('1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

- 교과부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순증을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교사 증원 등 수급대책 수립

○ (지도교사)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교사는 체육교사 및 스포츠강사 외에 일반교과 교사도 지도 가능('학교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 '11.4.5)

- 일반교사, 체육교사 외 추가 시수에 대해 스포츠강사 및 인건비 지원
- 체육재능뱅크, 명예체육교사, 대학생 스포츠 자원봉사 등 인력지원 확대 노력
- 교육기관 기관장(교과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장)과 체육단체장(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대학총장, 지자체장 등 MOU 체결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체육재능뱅크 구축·운영('11.10월~)

※ 스포츠 스타 1,000명을 명예체육교사로 위촉 예정('12.3.7./올림픽파크텔)

○ (활동반 조직) '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활동반 조직(편성)

- ('12. 2월) 학교에서는 '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종목을 선정하여 강사수급, 시설활용 등 기본계획 수립

- (**12.3월**) 학생들이 입학(개교)후 본인들의 2~3개 희망종목을 받아 배치
 - 학교에서 종목 선정은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되,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

**<12년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30개 종목) 현황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선정>**

축구, 농구, 야구, 창작댄스, 댄스스포츠, 태권도, 검도, 유도, 수영, 배구, 소프트볼, 줄넘기, 배드민턴, 피구, 핸드볼, 씨름, 육상/마라톤, 체조, 탁구, 테니스, 풋살, 플로어볼, 넷볼, 인라인롤러, 족구, 스포츠줄다리기, 티볼, 플라잉디스크, 게이트볼, 보디빌딩
* 2종목(택견, 국궁) 추가 예정

○ (장소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장소(체육시설) 확보

- 학교 밖 지역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4대강 주변, 공설운동장, 공원 등)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체육단체, 대학 등과 MOU 체결 등 추진
- 지역 체육시설 이용시 시설사용료 등 운영비 일부 교과부 지원

☞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체육교과 기준수업시수를 반드시 준수토록하고 중학교는 기준수업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

- '11년도부터 체육·예술교과 수업시수 확보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 (내용) 종목별 실기지도서, 웹콘텐츠, 디지털 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체육 실기수업의 경우 다양한 영상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전개가 필요

○ (목표) 20종목('11년 10종목, 12년 10종목)

- '11년도에 10개 시·도교육청별 1종씩 개발하고 '12년도에 10종목 추가 개발

- '11년도 개발 종목 :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핸드볼, 배구, 소프트볼 (티볼 포함), 피구(플로어볼, 플라잉디스크 포함), 줄넘기

○ (주관/개발) 시·도교육청 / 대학, 체육교과연구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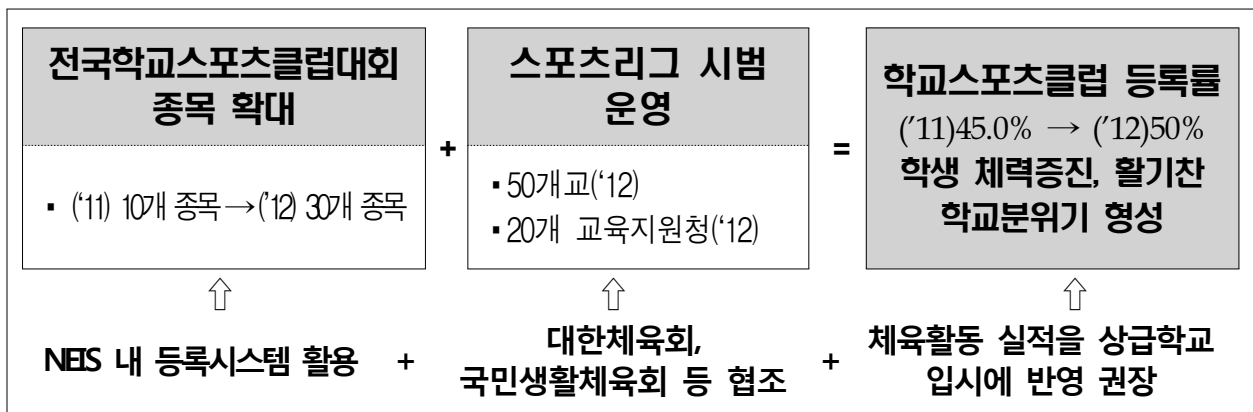
○ (예산) 총 860백만원('11~'12) / * 재원 : 교과부 특별교부금

- 500백만원('11년) → 360백만원('12년)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내용)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 체육수업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수업시간 확대
 -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여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와 수행평가 도구 개발 등
 - 환경 리모델링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등 체육시설 배치 및 체육교구 구비시 여학생 선호 종목 우선 고려
- (연구학교) ‘11년도 연구학교(31개교) 운영 결과 및 우수사례를 학교체육 담당 장학사, 교원 등 각종 연수시 우수사례 발표 등 추진
- (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선정시 댄스, 뉴스포츠 등 여학생 선호 종목이 포함되도록 선정(‘12. 2)
- (강사) 여학생을 고려하여, 스포츠강사(토요 스포츠강사 포함) 선발시 댄스, 무용 전공자 확보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2-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목표 50% 조기 달성

- (목표)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12년까지 50%로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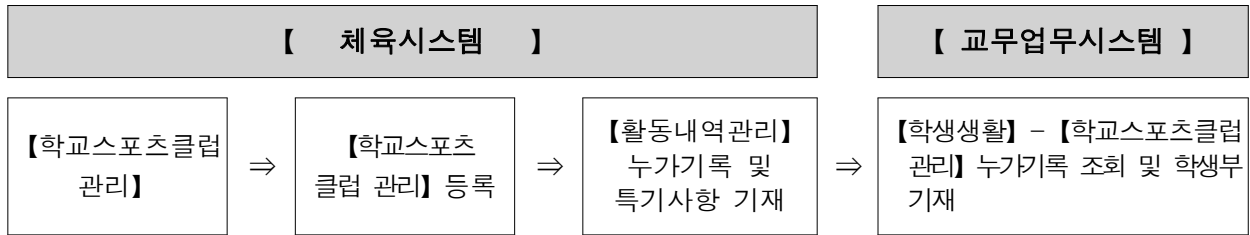
- 8.1%('07)→27.4%('09)→37.6%('10)→**45.0%('11)**→**50%('12년)**

※당초 '1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11년도에 45.0%를 달성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재설정함

○ (대상) 초2~고3 * 초2~3학년은 스포츠 강습 위주로 운영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체육시스템에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학생으로, 체육 관련 동아리, 방과후학교 등 참가 학생 등록(단,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제한하며, 1학생이 2개 종목까지 등록 가능)
-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종목(30개 종목)의 경우 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대회 주관기관(경기단체 등)에도 등록

<학교스포츠클럽 나이스(NEIS) 등록·관리 업무의 흐름>



○ (지도교사) 담당 지도교사(스포츠강사도 가능) 1명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등록하되, 동일 학교의 학생만으로 편성

□ 교내 스포츠 활동 확대

○ (방향)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상 교내 스포츠 리그 활성화

-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1개 이상 가입 권장('11년 40.7%)

○ (토요 스포츠강사) 토요 스포츠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여 토요 스포츠 리그 외 주중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중학교 3,000여명)

▪ 토요 스포츠강사('12년) : 1,448명(당초 계획) → **4,000명(2,552명 확대)**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인성교육 실천 중학교 스포츠클럽 **3,000**개를 지원(클럽당 3백만원)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

- 심사 요소 : 자체 내규(학칙준수, 폭력 Zero, 배려·나눔 등), 연간활동 계획 등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포상 및 사례집 발간('12. 12)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모든 중학교에 1명씩 지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기획, 상담활동 등 지원
 - 「학교체육 진흥법」(‘12.1.26. 공포) 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
- (입시 연계)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 권장

【우수사례 : 청원 내수중, ‘학교폭력추방 스포츠클럽’ 운영】

- 6개 초등학교 출신 간 학생들의 갈등을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해소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09년)8건 → (‘10년)5건 → (‘11년) 1건
-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은 ‘폭력추방 서약서’ 작성 의무화
- 선수 외에 학생들이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의 역할로 참여하여 경기를 통해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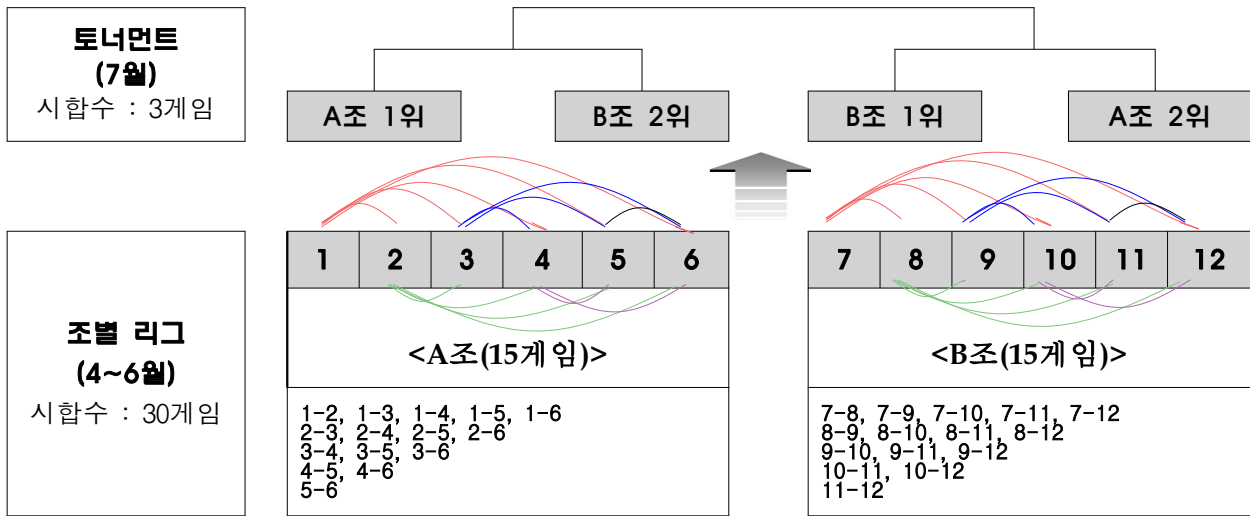
- (명예체육교사) 스포츠 스타 1,000명을 명예체육교사로 위촉하여, 1일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스포츠 스타 추천·선정(‘12. 2) → 결연학교 배정, 체육재능뱅크 등록(‘12. 3) → 위촉식(‘12. 3. 7.) → 프로그램 운영(연중)
- (우수 모델) 학교체육 활성화 창의경영학교를 50개교로 확대(‘11년 30개교)하여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개발·확산

□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 리그 확대

- (방향) 주 5일제수업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 대폭 확대
 - 중학교 교육지원청대회를 리그로 우선 전환(‘12년)하고, ’14년까지 초등학교 및 고교로 확대
 - 교육지원청(178개청) 리그 확대 : 중(‘12) → 초·중(‘13) → 초·중·고(‘14)

구분	'11년도	'12년도 목표
스포츠 리그	서울 11개청, 23개 리그 (136팀, 595경기)	전국 178개청, 890개 리그 (7,120팀, 49,840경기)
종목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티볼, 넷볼, 킨볼 (7종목)	단체(팀) 스포츠 중심, 남·여 종목 고려(1청당 5종목 이상)

<리그 대회 운영 방식(예시)>



* 시합 수 계산공식 : 토너먼트(n-1), 리그전($\frac{n(n-1)}{2}$) ※ n = 팀 수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학생축제로 발전

- (종목 확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을 확대하고, 스포츠와 인성교육을 접목
 - 신체활동량, 학생 참여율(재미), 사제동행, 부모동행 등을 고려하여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확대('11년 10개→'12년 30개)
 - 특히, 여학생을 고려하여 댄스(방송댄스, 댄스스포츠 등), 뉴스포츠(플로어볼, 넷볼 등) 등 여학생 선호 종목 포함
 - 기존 10개 종목('11)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탁구, 핸드볼, 피구, 줄넘기
 -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주요 목적으로 인성교육(배려, 나눔, 협동심 등)을 명시하고, 스포츠 인성 캠프* 등 부대행사를 병행하여 개최
 - ※ 스포츠 인성 캠프 : 시와 음악이 있는 인성 스포츠대회 개최(스포츠백일장 등 병행), 스타(스포츠, 예능 등)와 함께 하기, 가·피해학생 운동치료, 1社1校 / 도·농간 자매결연 등
 - ※ 대회명칭 변경 예시 : 배려와 나눔을 배우는 2012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구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요도>

대회 종류	교내 대회	⇒	교육지원청 (시·군·구) 대회	⇒	시·도교육청 대회	⇒	전국대회
일 정	연중(상시)		연중(상시)		9~10월		11~12월
종 목	자율		자율		자율		30개
출전팀	학급/클럽		클럽(학교 대표)		교육지원청대회 1~2위팀		시·도대회 1~2위팀
대회방식	리그+토너먼트		리그+토너먼트		토너먼트		토너먼트
주 최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교과부/문화부 장관

※ 종목 : 시·도대회 이하 종목의 경우 전국대회 종목(30개 종목)을 포함토록 권장

- (주관) 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체육단체, 지자체 등
 - 대한체육회(70개 협회), 국민생활체육회(66개 연합회), 지자체, YMCA, 대학 등 협조
- (지원) 교과부·문화부장관상/교육감상/교육장상 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
- (예산) 총 32,690백만원
 - 교과부(특교) 22,140백만원, 교육청(교특) 9,950백만원, 문화부(적립금), 600백만원 분담
 - 필요시 소정의 대회 참가비, 스포츠마케팅, 후원 등을 통해 대회개최비 확보

< '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예산 >

☞ 교과부(특교) 예산의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백만원)

연도	목표 (%)	사업예산(백만원)			
		교과부 (특교)	시·도교육청 (교특)	문화부 (공익사업적립금)	계
'11년도	47.3%	2,500	5,000	450	7,950
'12년도	50%	17,690	14,400	600	32,690
		(54.1%)	(44.1%)	(1.8%)	(100.0%)
증감('12-'11)	(2.7%)	19,640	4,950	150	24,740

▶ 교과부(특교) 예산 산출기초

-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4,240백만원) : 전국대회 개최비 1,000백만원, 출전비 3,136백만원, 기숙형고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104백만원
- ※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 4,450백만원(50백만원×178개 교육지원청×50%)
- ※ 교과부(특교), 시·도교육청(교특)이 5 : 5 분담
- ※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9,000백만원(3백만원×3,000개 클럽)

□ 기숙형고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목적) 기숙형고교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활동 활성화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 지역 교육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육성
 - ※ 기숙형고교 '08년 82교 → '09년 68교 지정(총 150개교)
- (대회기간) '12. 3 ~ '12. 12 *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개최시기 설정
- (참가대상) 기숙형고교 1~3학년 재학생(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제외)
- (대회종류) 교내대회 → 시·도교육청대회 → 전국대회
- (대회종목) 축구(남), 농구(남), 탁구(여), 배드민턴(여)
- (사업예산) 총 554백만원 (교과부 104백만원, 학교 450백만원)

구 분	①교내 대회 (학교간 대회 포함)	②시·도대회	③전국대회
기 간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시도 실정에 맞게 실시	'12.9.15(토)~9.16(일)
주최/주관	학 교 (간사 학교)	8개 시·도교육청*/학교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교과부/경기도교육청
종 목	자율 선정	자율 선정 (전국대회 종목 포함 권장)	축구(남), 농구(남), 탁구(여), 배드민턴(여)
시 상	학교장상	시·도교육감상	교과부장관상
장 소	학교, 지역체육시설 등	학교, 지역체육시설 등	경기도 일원
소요예산 (추산)	450백만원 (3백만원×150교)	64백만원 (8백만원×8개 시·도)	40백만원 (대회운영비 외 대회출전비 일부 보조)
	(부담) 학교(100%)	(부담) 교과부(100%)	(부담) 교과부(100%)

※ **소요예산** : 대회운영비(경기장사용료, 심판비, 시상 등), 대회출전비(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유니폼, 스포츠용품, 의료비 등

□ 학교체육 활성화 창의경영학교를 50개로 확대

- (목표) 30개교('11) → **50개교('12)**
- (역할) 체육수업 혁신, 토요 Sports Day 운영(스포츠 강습, 스포츠 리그 등), 학교체육 활성화 모델 개발·확산
- (지원) **40백만원/교**(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3년간
 ※ 업무 지원 기관 : 대한체육회
- (과제) **학교의 중·장기 비전, 학생·학부모의 수요, 학교의 물적·인적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시스템 개선**

[예시]

- 활동 중심의 체육수업 전개 및 체육수업 운영 충실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교육과정(수업, 창·체, 교양·선택)과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 주5일 수업제 시행 관련 토요 Sports Day 운영
-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포상 방안
- 학생 대상 다양한 종목별 스포츠강습 및 스포츠 리그 전개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된 **체육재능뱅크** 활용 확대
- **지역사회 인력·시설·장비**를 활용한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지역 스포츠클럽을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사제동행/가족 참여 학교스포츠클럽** 강습 및 대회 확대
-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 **신체활동 7560+** 운동(주5일 하루 60분 이상 운동하기) 전개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와 연계한 **저체력·비만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학교계획 하에 건강체력인증제(줄넘기, 수영, 태권도 등) 시행**
-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부적응 학생 대상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전개
- **기숙사 운영고교의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0교시, 점심시간 등 체육프로그램 운영**
- **매일 운동(Daily P·E)하는 학교만들기** 확산
- 초·중·고별, 남·여별 체육교구·시설 개발 및 활용 방안
- **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대학생 등 전문 인력 활용 방안**
- **방과후학교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를 활용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 **체육활동이 인성과 두뇌발달,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운영시스템 개선**
- **학교운영위원회 내 학교체육소위원회를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스포츠강습 및 대회 개최 등 지역 거점학교(선도학교) 역할 수행**
- 학교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 독창적인 스포츠활동 관련 **교원자율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원중심 교과연구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 연구학교(창의 경영학교) 현황

학교별	구분	학교명	주제	연차별
중	시교육청	정각중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즐거움·건강한·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2/3
중	시교육청	계산여중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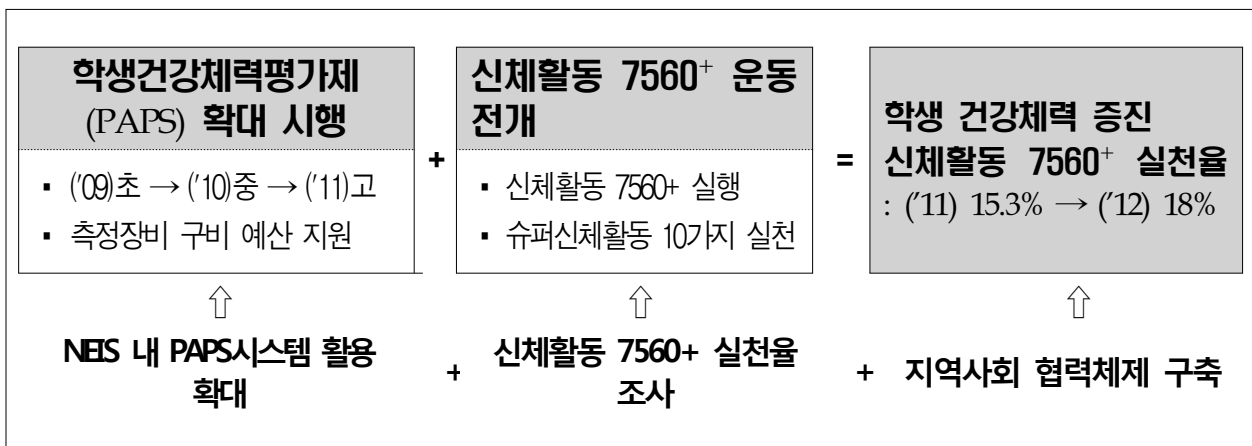
□ 건강증진모델학교(Health Promoting School) 운영 확대

- (목표) **100개교('12) → 200개교('13) → 300개교('14)**
- (내용) 학교 내 건강부장 신설, 건강증진센터 설치(비만·음주·흡연 예방 및 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체력증진 등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 30백만원 내외/교(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3년간
※ 업무 지원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유도

- (내용)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교에 적용을 권장하는 등 고입에 반영
- (방안)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입시 관련 회의시 안내 등 반영 학교 확대 노력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3-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충실
:::

□ 학생신체능력검사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로 개선

- 학생건강체력평가 → 신체활동처방 → 체육활동 전개(PAPS시스템으로 관리) - ('09) 초5~6(초4, 선택), ('10) 중, ('11) 고 적용
 - *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의 브랜드명
- 「**학교건강검사 규칙**」(부령) 중 학생신체능력검사 관련 조항 개정('12. 2)
 - 학생건강체력평가 종목 중 체지방률을 필수평가에서 제외하고, 2007년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상의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를 적용
 -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선택평가(4종목)를 학교의 자율 선택·실시로 변경
 - ※ 체질량지수(BMI ; Body Mass Index, kg/m²) : 키, 몸무게로 정상, 경도비만, 고도비만 등 판정

※ 체지방률(% body fat) : 체지방측정기를 통해 체지방량, 근육량을 측정하고 비만 판정

현 행	개 정 안
<필수평가> (체지방) ① 체질량지수(BMI), ② 체지방률	<필수평가> (비만) ① 체질량지수(BMI), ② (삭제)
<선택평가> ① 비만평가, 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 ④ 자세평가 ※ 3년에(학교급별) 1회 이상 실시	<선택평가> ① 체지방률 평가, 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 ④ 자세평가 ※ 학교에서 자율 선택 · 실시

○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측정산식

① 체력평가 등급 비율(70%) : $\frac{(\text{초등학교} + \text{중학교}) 4\sim 5\text{등급 학생 수}}{\text{검사 인원 수}} \times 100$

② 향상도(30%) : $\frac{(\text{2011년 } 4\sim 5\text{등급 비율}) - (\text{2010년 } 4\sim 5\text{등급 비율})}{\text{2010년 } 4\sim 5\text{등급 비율}} \times 100$

▪ 향상도(증감비율)는 초·중학교만 평가, 고등학교는 '12년 평가부터 반영

○ 학교정보 공시

▪ 4~5급 학생 수 : 학교정보공시('12. 4월 공시, '11.12.31 기준)

▪ 검사 인원 수 : 학교정보공시('12. 4월 공시, '11.12.31 기준)

○ NEIS 교무업무시스템 내 PAPS시스템 활용 확대

- PAPS시스템(교원용, 학생용, 학부모용)을 통한 건강체력평가 결과 조회 및 건강체력일기 작성, 상담서비스(on-off Line) 등 지원

▪ 상담전화 : NEIS 종합상담센터(☎ 02-564-1114)

- PAPS 전담강사 등을 활용한 교사·학생·학부모 연수 활성화

○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D) 도입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D) 종목 및 기준, 신체활동처방매뉴얼 개발 ('12~'13)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D) : 장애학생의 건강체력평가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장애학생용 건강체력평가체계(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특수학교용(5종)은 장애영역별(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로 개발('12~'13)
- 일반학교용(1종)은 기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12~'13)
 - 사업비 : 360백만원(교과부 특교)
 - (개발비) 300백만원(6종×50백만원), (적용비) 60백만원(6개영역×10백만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14)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D) 종목 및 기준, 신체활동처방매뉴얼을 '12~'13까지 개발하고, '14년에 NEIS와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관련 연수 및 시범학교 운영 확대(시·도교육청)
 -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학교별 건강체력교실 운영 적극 장려
- 지역사회 인프라 등 협력체제 구축
 - 교육청과 대학 등 업무협력(MOU) 체결을 통해 대학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측정서비스 등 지원
 - ('09~'11)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에 측정·교육 등 지원
 - 보다 정밀한 측정·평가를 위해 국민체력센터,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등의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확대
 -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1社 1校 지원운동' 추진
 - 학생건강체력평가 장비, 헬스기구, 건강체력교실 확충 등 노력

3-2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시('07~)

-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체력 증진, 질병예방, 비만감소를 위해서는 하루 60분 정도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
 - 미국(CDC), 캐나다 : 청소년은 하루 최소 1시간 신체활동 권장
 - ('70년대) 3일/주 ⇒ ('90년대 이후) 5일, 거의 날마다/주 변화 추세

○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실천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을 한다."

- 주당 신체활동 참여일수 : 정규수업 외, 의도적 계획 하에 60분/일 이상 운동

□ 슈퍼 신체활동 10가지 실천

- “학생 신체활동 7560+(주 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체력 증진에 효과가 큰 ‘슈퍼 신체활동 10가지’ 실천
 - 슈퍼신체활동 10가지 : 스트레칭, 빠르게 걷기, 페이스(왕복달리기), 달리기, 줄넘기, 순환운동, 계단오르기, 자전거 타기, 근력운동, 구기 운동 등

□ 학생 신체활동 7560+ 실천율 조사(‘12. 11월)

- ‘11년도 학생 신체활동 7560+ 실천율 : **15.3%**
 - ‘11. 12월 학생 신체활동 7560+ 실천율 조사 결과 15.3%로 나타남(초 25.0%, 중 12.4%, 고 11.7%)

(%)

구 분	초5	초6	소계 (A)	중1	중2	중3	소계 (B)	고1	고2	고3	소계 (C)	전체 (A+B+C)
’09	15.3	11.2	13.3	-	-	-	-	-	-	-	-	13.3
’10	20.8	17.7	19.2	8.9	8.3	10.6	9.3	-	-	-	-	14.2
’11	25.7	24.2	25.0	15.9	11.8	12.9	12.4	9.7	8.5	14.9	11.7	15.3
증감 (’11-’10)	4.9	6.5	5.8	7.0	3.5	2.3	3.1	-	-	-	-	1.1

※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초(’09), 중(’10), 고(’11) 연차적 확대 실시에 따라 ’09~’11년 초·중·고 학생 신체활동 7560+ 실천율을 매년 조사하고 있음

3-3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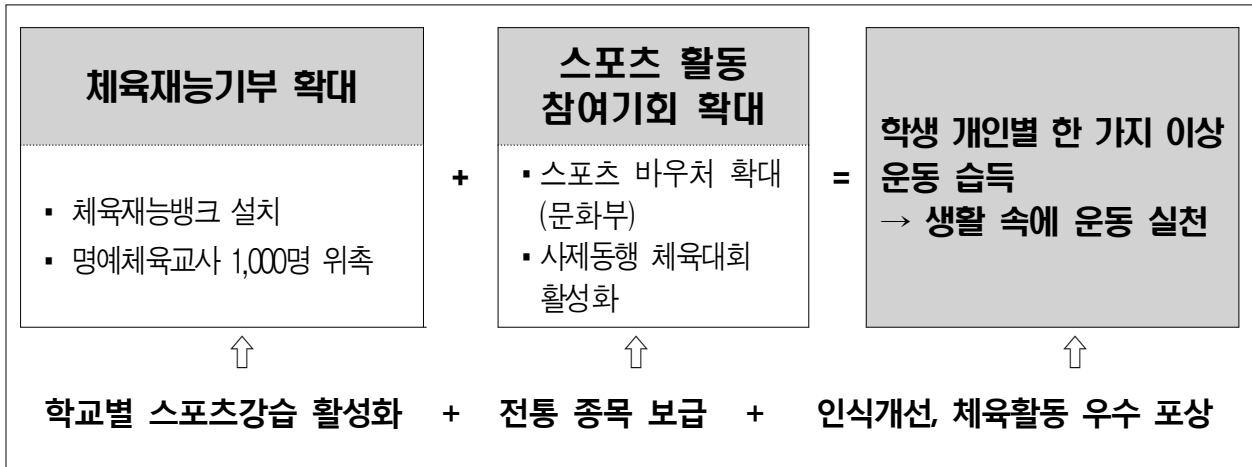
- 학생 개인별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 운동을 습득토록하고, 학교별로 전교생이 함께하는 스포츠 종목을 교기로 육성
 - 연간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 강구
 - 1인 1운동 : 개인별 운동 특기종목 습득으로 평생스포츠로 연계
 - 1교 1기 : 학교의 특색을 살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
 - ※ 1학교 1운동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학교 실정에 맞는 「종목 선택제」 실시 권장

- 학교 여건에 맞는 1종목을 선택하여 1교시 시작 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한 1교 1기 실천
 - 부산시교육청의 '종목선택제'('08년~) : 학교별로 5개 종목(걷기, 건강달리기, 줄넘기, 맨손체조, 윌빙체조) 중 1종목을 선택하여 전교생이 1일 20~30분, 주3~5일 실시 / 학교평가에 반영
 - 학교별 교기로 육성하는 종목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직원, 학생 등 스포츠 강습 활성화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4-1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체육재능기부 확대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체육재능뱅크」 설치·운영(‘11.10월~)

- (내용) 「체육재능뱅크」를 설치하여 체육재능기부자와 학교를 연결함으로써 스포츠 강습, 스포츠리그 전개
- (운영) 16개 시·도교육청별 체육재능뱅크(인적, 물적)를 구축하고,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체육기부자 인력 DB 수시 업데이트
 - 대학, 체육단체 등과 MOU 체결 및 스포츠스타, 자원봉사자 등 가입 확대

□ 스포츠 스타 1,000명을 명예체육교사로 위촉·운영

- (목표) 스포츠 스타 1,000명
- (주최/주관) 교과부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70개 협회)와 국민생활체육회(66개 연합회) 추천 후 선정
- (역할) 명예체육교사의 1인 1교 결연(모교 등) 및 체육재능기부
 - 결연식, 1일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 명예체육교사와 학교가 방문 일정, 프로그램 등 협의 후 진행
- (관리) 체육재능뱅크(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관리
 - 명예체육교사가 체육재능뱅크에 등록 후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관리
- (위촉식) 스포츠 스타 명예체육교사 위촉 워크숍 개최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스포츠 스타 명예체육교사에게 위촉장 전달 예정

- (예산) 25백만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 적립금)
 - 위촉 워크숍 개최 비용 및 심의 위원회 운영비 등
 - ※ 위촉장 및 책자 인쇄(10백만원), 기념품(10백만원), 장소 임대 및 회의비 등(5백만원)
- (일정) 명예체육교사 모집('12. 1~2) → 워크숍, 위촉장 교부('12. 2~3) → 사업 추진(학기중) → 사업 평가('12. 11)

□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

- (내용)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가맹 단체 등) 등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수익자 부담 강습이나 대학, 체육단체 등 위탁 운영
 - 호서대 유소년스포츠클럽(축구, 야구, 농구 등), 클럽 축구교실 등
 - 전통 종목(씨름, 줄다리기, 궁도, 국궁, 택견 등), 뉴스포츠(플로어볼, 플라잉디스크,츄크볼, 프리테니스 등), 승마, 에어바운스 등
- (운영)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 단체를 모집('12. 상반기 / 대한체육회)하고 학교에 운영계획을 안내하여 자율적 참여 권장
- (발전)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4-2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 스포츠 바우처 확대

-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만7~19세)에게 스포츠강좌 및 용품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확대 시행
- (목표) '11년 28,960명, '15년까지 54,300명까지 확대
 - 28,960('11) → 36,000('12) → 72,000('13) → 108,000('14) → **144,000명('15년)**
 - 기지원 현황 : ('09년) 9,402명(3,920백만원) → ('10년) 14,085명(6,000백만원) → ('11년) 29,050명(12,308백만원)
- (주관)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예산) 문화부(국민체육진흥기금), 지자체 분담(문화부 70%, 지자체 30%)
 - 12,308('11) → **15,120('12)** → 30,240('13) → 45,360('14) → **60,480백만원('15년)**

□ 사제동행(師弟同行) 체육대회 활성화

- (내용) 학생,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스포츠문화 확산 및 밝고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 교내 대회(반/학년/클럽 대항 등), 학교간 경기대회 등 확대
- (주관) 종목별 체육단체, 교육청, 지자체 등
- (지원) 교과부장관상 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회 안내
- (예산) 주관 기관 자체 예산
 - 필요시 소정의 대회 참가비, 스포츠마케팅, 후원 등을 통해 대회개최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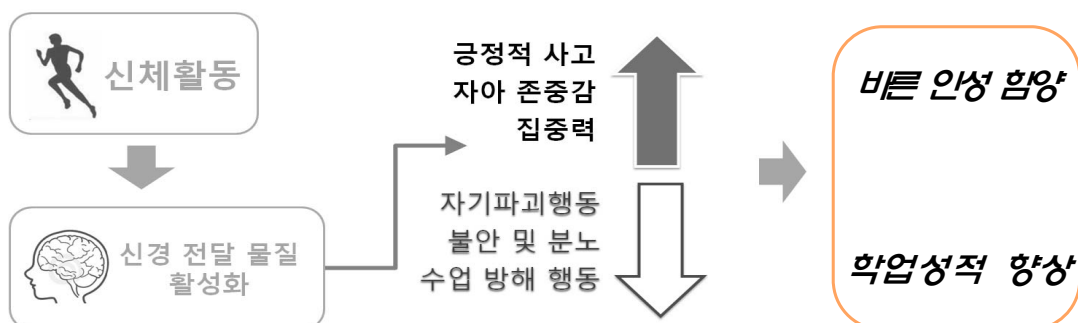
□ 전통종목 보급 확산

- (내용) 전통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통한 전통종목 계승 발전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확대
 - 전통종목 : 씨름, 줄다리기, 궁도, 택견, 널뛰기, 그네뛰기, 연날리기, 족구, 제기차기 등
- (보급) 국민생활체육회 등 주관으로 전통종목 보급
- (대회개최) 국민생활체육회, 지자체 등 주관으로 전통종목 대회 개최
 - 기타 전통놀이 이벤트 및 전통문화 시연행사 병행
- (지원) 대회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후원명칭사용 승인, 대회 안내

□ 체육활동의 가치 등 홍보 강화를 통한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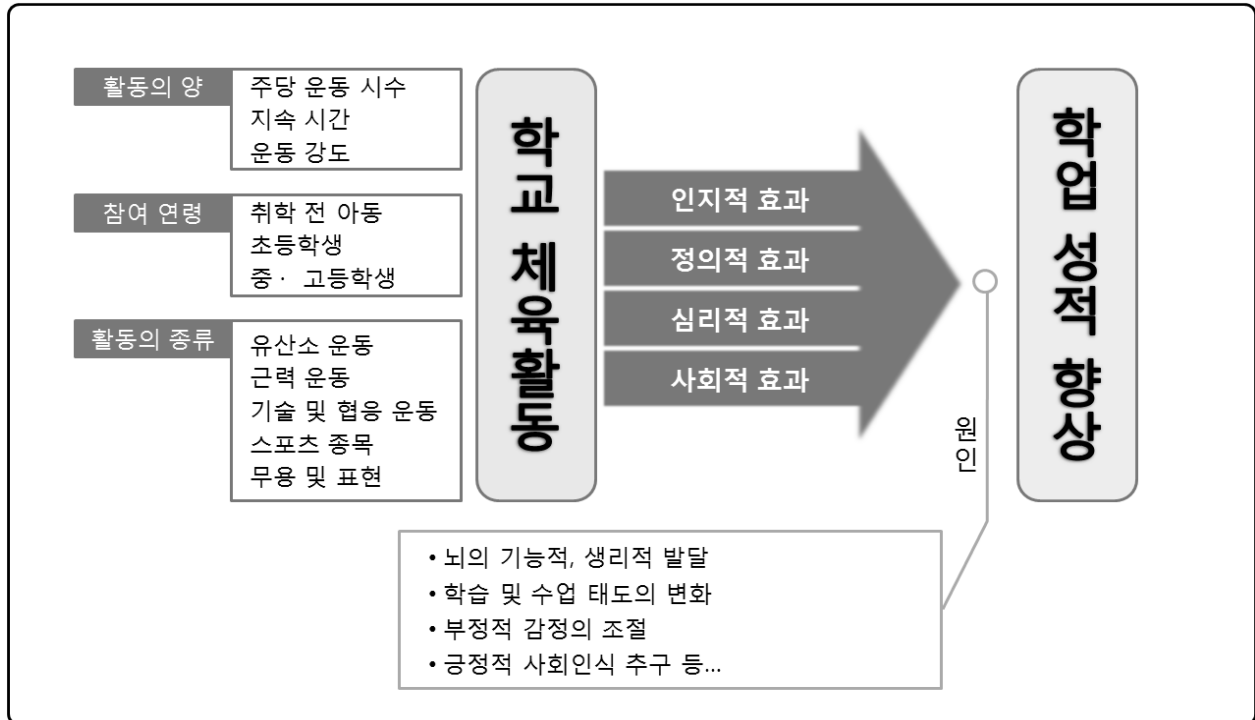
- (목적) 학교폭력 문제의 사회적 우려 심화 등에 대해 학생 체육활동을 통한 학생 체력증진, 감성교육 등 학교 교육력 제고 필요
 - 체육활동(유산소 운동, 태권도, 축구리그 등)이 불안 해소 및 자아존중감/주의집중력/ 학업수행능력 향상에 도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신체활동 효과(Flook et al., 2005)>



- **(내용)** 체육활동이 튼튼한 체력, 인성 함양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제고를 통한 **학업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확산
- **(방법)**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보급, 언론 보도(홍보), 연수 등을 통한 교육 확대

<학교체육 활동 - 학업 성적의 관련성과 원인('11.8, 서울대 최의창교수)>



4-3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교직원 등 포상 ❖❖

□ 교과부 체육분야 우수교(기관, 단체) 및 유공자 표창

- **(대상)** 각급학교, 교육청, 기관(단체) 및 직종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유공자 (교직원, 일반직, 민간인, 지역인사 등도 포함)
- **(수량)** 총 81건 예정(시·도교육청 추천 70건, 교과부 추천 11건)
- **(훈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및 감사장
- **(시기)** '12. 12월 중 시상(또는 교육감이 전수)
- **(공적내용)** 체육수업·평가방법 개선 등 체육교육의 질 제고,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시행,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 학교운동부 선진화,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선진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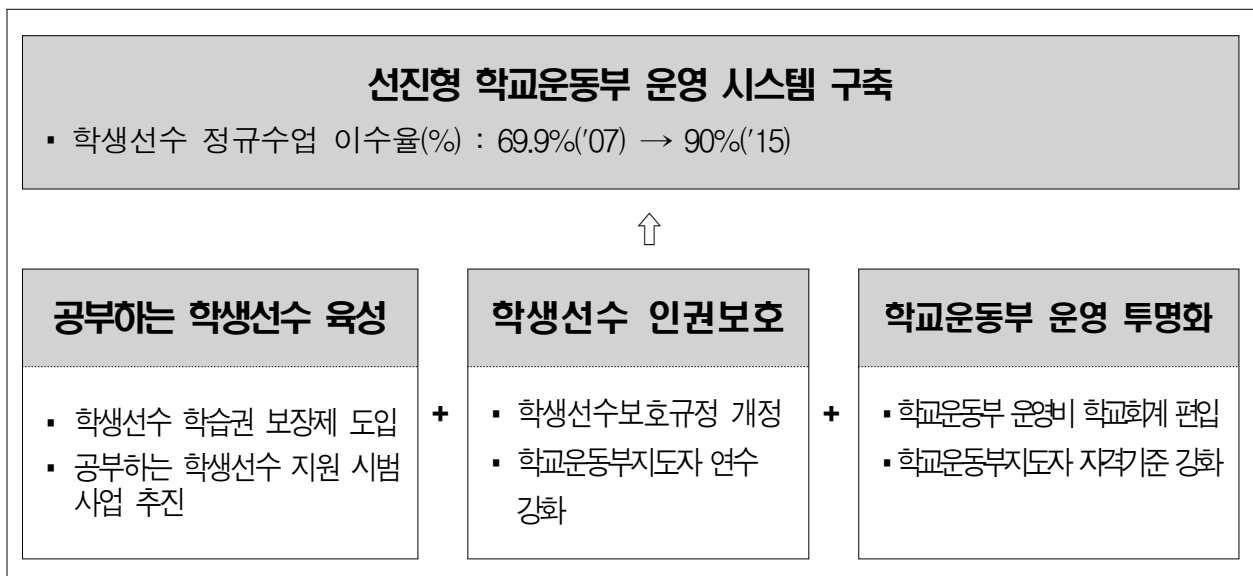
□ 우수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포상 및 장학금 지원

- (내용) 유망 선수(성적 우수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 학업성취 우수선수 등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 → 기량 향상 및 운동지속 여건 조성
- (목표) 1,668명('12)
 - '11년 실적 : 2,435명(체육장학생 668명, 농어촌 유망선수 500명, 학교운동부 1,267명)
- (시상) 장학생 상장 수여(총 128명) (명)

구 분	교과부장관상	문화부장관상	대한체육회장상	계
학교운동부 육성	16	16	32	64
농어촌 유망선수 지원	8	8	16	32
체육장학생 사업	8	8	16	32
계	32	32	64	128

- (주관) 대한체육회
- (예산) 1,500백만원('12)

5. 학교운동부 선진화(엘리트 체육)



5-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최저학력제 도입 여부 **설문조사 결과**(’08. 11) : **필요 67.4%** > 불필요 17.5%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1항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 적용대상, 성적기준, 도입시기

- 적용 대상 : **초4~고3**(9개 학년)
- 적용 시험 : **학교 시험**(1·2학기말합산 성적, * 중간+기말+수행평가)
 - ※ 초·중 :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 고 : **3개 교과**(국, 수, 영)
 - ※ 미이수 교과 발생시 해당 교과를 타교과로 대체 가능(학교장 결정)
- **최저학력 기준** : 학교 시험(1·2학기말합산 성적)에서 전교생 5개(3개)교과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 : **(초) 50%, (중) 40%, (고) 30%**
 - ※ 단, 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 인정**
 - ※ 중간고사와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는 도달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저학력 기준의 제한 기준이 아님**
 - ※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100%(70점)
 - ※ 수시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과목별 하위영역의 평어를 수치화(매우잘함-4점, 잘함-3점, 보통-2점, 미흡-1점)한 후, 교과별 하위영역 점수를 모두 합하여 학급 평균의 50%에 도달한 경우 최저학력기준 도달 인정
- 적용 시기 : **’12년도 초4~중1까지 시행**(’12. 3. 1.~)

※ 중2~고3 : '13년 이후 단계적 시행('17년 고3 적용) / * 현재 중2 이상 학생선수는 적용 안됨

학교급 \ 적용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 제제·구제 방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 단,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 ※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기단체 등)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 학력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교육청, 학교, 경기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 **맞춤형 학습지도(대학생 멘토링 등),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환경 개선(교육청, 학교)**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12개교 : 4개 시·도 × 초·중·고) 외 시도교육청별 자체 시범학교 운영 확대

○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지도자 등 성과 평가에 반영**

- 학습권 보장제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방안 강구

□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 노력**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을 잘 갖추어 운영
- ※ 「학교체육 진흥법」(‘1.12.30. 의결)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 추진

구 분	종 전(~‘11)	개정(‘12~)
내 용	○초·중학교 : 합숙훈련 전면 금지 ○고등학교 :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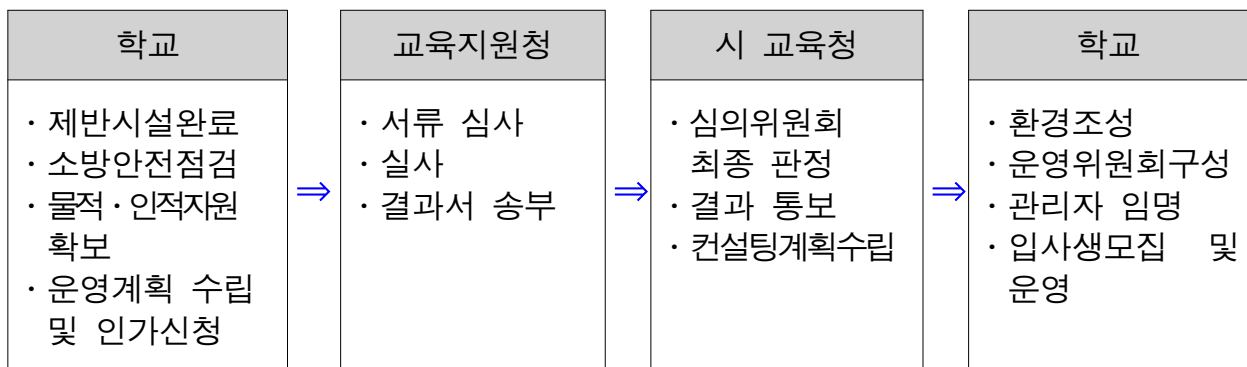
<참고>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②(생략)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운동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숙소 운영 허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16523호(2011. 12. 13.) 공문게시물 참고

- 초·중학교 : 합숙소 운영을 허용하나 다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가. 학생선수의 숙식(宿食)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을 잘 갖추어 운영
 - 나. 학교에서 합숙소 운영계획 수립 후 교육청에 승인 요청
 - 다. 합숙소 운영위원회 구성 후 해당학교별 기준안 마련
- 학생선수 기숙사 인가 절차



□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 종목별 대회일수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일수 3~4회/년 제한

- 축구의 경우 초중고 축구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는 2회/년 이내로 제한(12년 1월부터 적용 / 방학 중 대회도 참여 횟수에 포함됨)

대회일수 제한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12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 택견, 공수도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보 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 슬론, 볼슬레이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1종목) 축구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체고 5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체고 4회 이하)		연간 2회 이하 (체고 3회 이하)	

- 단, 다음의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음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 국가대표 선발대회(대회명과 경기 개최요강에 '국가대표 선발대회'임을 명시하고, 경기단체장이 일정한 참가자격을 부여한 대회)
-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
- *학기중 주말, 공휴일에 참가하는 대회는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 횟수에 포함됨

- 대회참가 신청서에 전국대회 참가횟수 명시하고 학교장, 경기단체에서 확인(규정을 위반하여 입상한 경우 무효처리, 시·도교육청 장학지도 시 이행 여부 감독 철저)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강구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능한 종목(빙상, 조정, 골프 등)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으로 학교장 결재 후 운영
- 고등학교(2,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등 별도 반을 편성·운영 가능
 - 학생선수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 확대

○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 수립·시행

- ‘기초학력부진아반’에 성적저하 학생선수 참여 확대 등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방안 마련

○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제 등 운영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에 대한 봉사활동시간 인정(봉사활동 확인 : 운동부 지도교사)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 등 순회 학습도우미 운영

□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

○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완화

- 시·도별 중입·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배정 시 경기실적 반영 비율 축소

○ 「선수등록규정」(대한체육회) 사전 고지

- 선수등록 시 학부모, 학생선수에 대해 전·출입 시 필요한 학교장동의서 등 선수등록기준 사전 고지로 민원 최소화

○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학교장동의서 발급

-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교육적 측면 고려

5-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



□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인권 보호

○ 「학생선수보호규정」개정

- (필요성) 대한체육회의 「선수위원회규정」개정('09. 12월)에 따른 (성)폭력을 행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징계 규정 등 개정 필요
- (내용)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지역인사 등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및 전문 민간단체와 연계 운영 확대
 - ※ 민간단체 :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성폭력상담소 등
- (정보 공유) (성)폭력을 행한 지도자 및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에 명단 통보

< 현행, 개정안 비교표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성 격	○ 자문기구	○ 자문기구
위원장	○ 시·도교육청 :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 국장 학교 : 교감	○ 민간위원
위 원	○ 5~7인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무원 위주	○ 7~13인(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 학부모, 선수 인권보호 및 체육, 법률, 상담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민간 전문가 위주
간 사	○ 없음	○ 위원 중 1인(위원장이 지명)
조 사 구 제	○ 선수격리 보호 등	○ 선수격리 보호, 학교폭력 관련 전문 기관 위탁 교육 등 제반조치 강구
징 계	○ 일반 폭력과 성폭력 미구분	○ 일반 폭력과 성폭력 구분

□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연수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 (내용) '11년도부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 '11년도 실적 : 학교운동부지도자 590명 직무교육 실시

- (방향) 직무교육 이수시간 단축 및 교육내용 엄선
 - 60시간, 6박 7일('11) → 40시간, 4박 5일('12)
- (주관)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엘리트체육지도자연합회 공동 주관
- (의무화) '14년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 전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15년도부터 3년 주기 이수
 - 세부계획은 '12. 2월중 안내 예정임
-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1,2급) 자격 이수 과정에 인권 및 (성)폭력 관련 교육 신규 추가('11~)
 -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선스, 유형별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등을 자료로 활용
 - 체육과학연구원에서 '10년부터 스포츠인권 관련 경기지도자 1급 수업에 정규과정으로 신설(10시간)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성)폭력근절 등 인권교육 실시(교육청)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집합, 사이버, 개별 연수 등) 및 성교육을 이수토록 지도 강화
-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인권교육 내용 반영토록 지도 강화
 -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연 2회, 단위학교)
 - 주 내용 : 인권존중, 성교육, 생명존중, 스포츠맨십, (성)폭력 예방법 등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체계 유지
 - 학생선수, 운동부지도자, 학교장간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5-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13. 6. 1. 까지 취득(3년 유예)

- 운동부지도자 5,730명 중 ㉠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637명(11.1%), ㉡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143명(54.9%), ㉠+㉡ 3,780명(66.0%)

○ 학교운동부지도자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내용)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심의) 신분상 불이익(파면·해임 등) 조치시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부산, 대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코치등급제와 평가제 시행

②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 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 (학교회계) 운동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경비 등 운동부원 학부모 부담 제경비

- (학교발전기금회계) 일반 학부모, 동창회, 후원회 등 운동부 지원 기부금과 운동부지도자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품 구입을 위한 운동부원 학부모 기부금 →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조성 방법, 수입, 지출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시·도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집행 투명성 확보

-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10. 2~)

③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 (구기종목)의 경우 : 선발기준을 팀성적(현재)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개선)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기록경기)의 경우 : 전국대회 상위 성적(현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개선)으로 제시 등 선발기준 구체화
-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개선
 - 입상실적(현재) 외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개선)

④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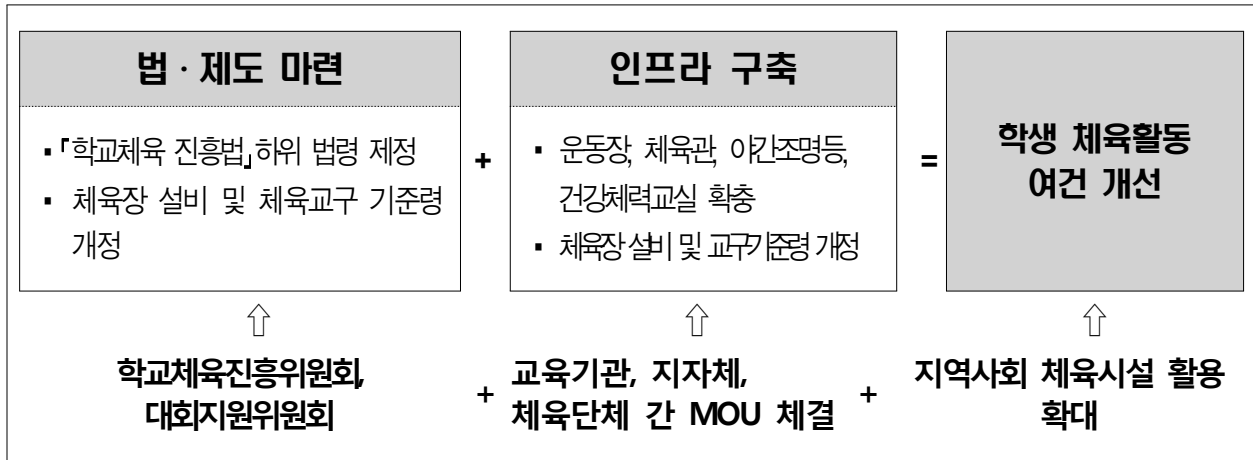
- (내용)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방법) 운동부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⑤ 학교운동부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장기과제)

- (내용) 학부모 경비부담의 일반코치(1,718명)를 전임코치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임코치(4,018명) 인건비 현실화 노력
- (추진방안) 시·도교육청 계획 하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코치 처우개선 노력



6. 법·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6-1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학교체육 진흥법」의 하위 법령 제정

- **(필요성)**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됨('11.12.30)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하위 법령 제정(공포 후 1년 내) 필요
- **(내용)** 「학교체육 진흥법」 19개 조항 중 7개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교육과학기술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위 법령	주요 내용
대통령령	11조(학교운동부지도자), 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1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17조(학교체육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령	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8조(학생건강체력평가), 9조(건강체력교실), 11조(학습권 보장제, 학생선수 기숙사),
시·도 조례	16조(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 **(방법)**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 구성·운영, 정책연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 법령 제정
- **(일정)** 하위 법령 제정 계획 수립('12. 2) → T/F팀 구성·운영('12. 3 ~ 8), 정책연구('12. 4 ~ 10) → 법령 제정 절차 진행(연중) → 공포('13. 2)

□ 체육장 설비 및 교구기준령 개정

- (필요성) 「2007 개정교육과정」(07. 2월)에 의거 **체육과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시·도교육청 조례) 개정 필요
 - 교과부 정책연구(‘09. 5~’10. 2 / 서울교대 안양옥 교수)를 통해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표준안 개발
- (방향) 뉴스포츠 등 새로운 종목 개발 등 시대 변화 및 학생의 수요 반영 등 다양한 체육장 설비 및 교구 확충(‘12. 3월까지 개정)

<2007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구 분	현 행	개정 방향
체육과 교육과정 변화	<p style="text-align: center;"><운동기능 종목 중심></p> <p>① 육상운동, ② 체조, ③ 수영, ④ 개인 및 단체운동, ⑤ 무용, ⑥ 체력운동</p> <p>* 운동기능의 숙달을 위한 종목별 체육교육 과정 구성 / 스포츠 기능(sport skill) 중심</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체활동 가치 중심></p> <p>① 건강 활동, ② 도전 활동, ③ 경쟁 활동, ④ 표현 활동, ⑤ 여가 활동</p> <p>*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증진을 위한 및 신체활동 가치 중심 / 삶의 기술(life skill) 중심</p>

□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정

- (필요성)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이 상이하여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문제점 발생
- (방향)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선 방안을 안내하여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개선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격 조건	경기지도자 2급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 임용
계약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통일
계약 해지	구체적 사례 명시 및 다면 평가기준 마련 등 재임용 심사
보수 규정	연봉 기준액 및 각종 수당(출장비, 초과근무수당, 특별근무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등)의 지급 명시
직무 명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 규정
근무 환경	근무여건 개선 및 학생선수 상담 등을 위한 별도의 사무환경 마련

6-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원 강화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
 - <근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09. 1. 교과부·문화부 공동 훈령)
- (조직)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외 시·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시·군·구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성 격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규정(훈령) ○ 정책 심의기구	
위 원 장	○ 민간전문가	
부위원장	○ 교과부 교육복지국장 ○ 문화부 체육국장	
위 원	○ 2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급 인사 - 학교체육 전문가 등 - 위촉위원 임기 : 2년	
간 사	○ 교과부·문화부 담당 과장	
운 영	○ 반기별 1회 정기운영 원칙-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 운영	

□ 대회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각종 대회의 성공적 추진
- (성격)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로 구성
-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대회지원위원회 / 시·도대회지원위원회 비교>

구 분	중앙 대회지원위원회	시·도 대회지원위원회	시·군·구 대회지원위원회
성 격	○ 중앙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	○ 시·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	○ 시·군·구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
위원장	○ 민간전문가 (위원중 위촉)	· (좌동)	· (좌동)
부위원장 (당연직)	○ 교과부, 문화부 체육담당 과장	○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 또는 장학관	○ 교육지원청 체육담당 과장 또는 장학관
위 원	○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종목별 협회 등 체육단체 담당자 · 학교체육 전문가 등	○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시·도종목별 협회 등 체육단체 담당자 · 자치단체 담당자 · 학교체육 전문가 등	○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생활체육회, 종목별 협회 등 체육단체 담당자 · 자치단체 담당자 · 학교체육 전문가 등
임 기	· 위촉위원 임기 : 2년	· 위촉위원 임기 : 2년	· 위촉위원 임기 : 2년
간 사	· 교과부, 문화부 담당자	· 시·도교육청 담당자	· 교육지원청 담당자
운 영	· 반기별 1회 정기운영 원칙 · 시안에 따라 비정기적 운영	· (좌동)	· (좌동)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 설치·운영

- (목적)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체육 활동 장려 및 지원
- (역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기존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체육소위원회에 포함하되,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현행 유지
- (구성) 7명 내외(학운위 위원 + 체육관련 전문가 등)
- (방안)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
 - ※ 시·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및 각급 사립학교 정관 개정 불필요(현행 규정으로도 운영 가능)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운영

- (목적) 국가기관·교육청·유관기관 등에서 개발·보급하는 학생건강자료 제공 및 학생건강증진 관련 정보교류 및 공유 공간 제공
- (운영) 한국교육개발원(KEDI) 위탁 운영
 - 자료수집 및 검증, 콘텐츠 개발, 시스템운영, 웹사이트 운영·관리
- (서비스) 온라인 설문 조사 대행 및 학교체육 관련 자료 제공
 - 온라인 설문 조사 : 시·도교육청에서 온라인 설문 요청 시 설문지 탑재 및 설문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처리 결과 무료 제공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학생건강증진팀으로 공문 요청
 - 학교체육 관련 4개 영역의 자료 제공

<영역별 제공 자료>

영역	제공자료
건강체력 증진	PAPS 자료 탑재, 건강체력증진 관련 자료 등
학교스포츠클럽	자율체육활동, 스포츠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료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증진 체육수업자료, 건강 활동 수업자료, 방과후 수업자료, 특기적성 수업자료, 연구시범학교 관련 자료
학교체육시설 (교구)	학교체육(관)시설 현대화, 설비자료, 체육수업 교구관리 관련 자료 등



05 평가 및 홍보계획, 2012학년도 추진 일정

1. 평가 계획

○ 교과부/시·도교육청/학교 평가과제에 포함

-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담보

-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4~5등급) 학생 저감율,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체육수업시수 확보 비율
- 주요사업 실적 평가 : 신체활동 7560+ 실천율

○ 정보 공개

-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등 학생의 체육활동 관련 현황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

2. 홍보 계획

매체, 방법	주요 내용	관련 기관
사업 계획 안내	• 학교체육 주요정책 공문 안내	문화부, 교육청, 체육단체 등
언론(TV, 신문 등)	• 보도자료 제공 및 장·차관 인터뷰 • 학교스포츠 관련 기획 보도 등	KBS, 스포츠조선 등
세미나, 공청회 등	• 학교체육 정책 관련 홍보 및 의견수렴	대한체육회, 관련 학회 및 연구회 등
교육·훈련	• 학교체육 정책 관련 교육·훈련, 연수 확대	시·도교육청, 연수기관
홍보 동영상, 팸플릿 등	•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홍보동영상, 팸플릿, 우수사례 발굴·보급	시·도교육청, 체육단체 등
현장 방문	• 스포츠강사 배치, 토요일 Sports Day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등 현장 방문	문화부, 교육청, 체육단체 등

3. 2012년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교과 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 체육수업시수 확대													
○ 체육교과전담교사 지정 확대													
○ 스포츠강사, 토요 스포츠강사 선발·배치													
○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서류접수 마감													
○ '12년도 스포츠강사 평가													
②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대회 개최													
○ 전국기숙형고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 '13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수립													
③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 신체활동 7560+ 실천율 조사													
○ 학교별 1인1 운동, 1교 1기 실천													
④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 명예체육교사 1,000명 위촉·운영													
○ 체육활동 우수교, 유공자 표창													
⑤ 학교운동부 선진화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시행(초4~중1)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추진													
○ 학교축구/야구 주말리그 전개													
○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연수 실시													
⑥ 법·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 학교체육 진흥법의 하위 법령 제정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대상학교 선정													
○ 학교운동장 조성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 야간조명등, 건강체력교실 지원 학교 선정													

참고자료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모형(예시)



① 교내 리그

- 대회 기간 : (조별리그) 1학기 4~6월, 2학기 9~10월 → (왕중왕전) 11~12월
- 팀조직 / 시상 : 학급대항,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 학교장상
 - ※ 학교체육 활성화 창의경영학교('12, 50개교)에서 운영 모델 개발 · 확산
 - ※ 체육재능뱅크 활용 확대, 스포츠 스타 초빙 강습, 학교 홍보 활동 전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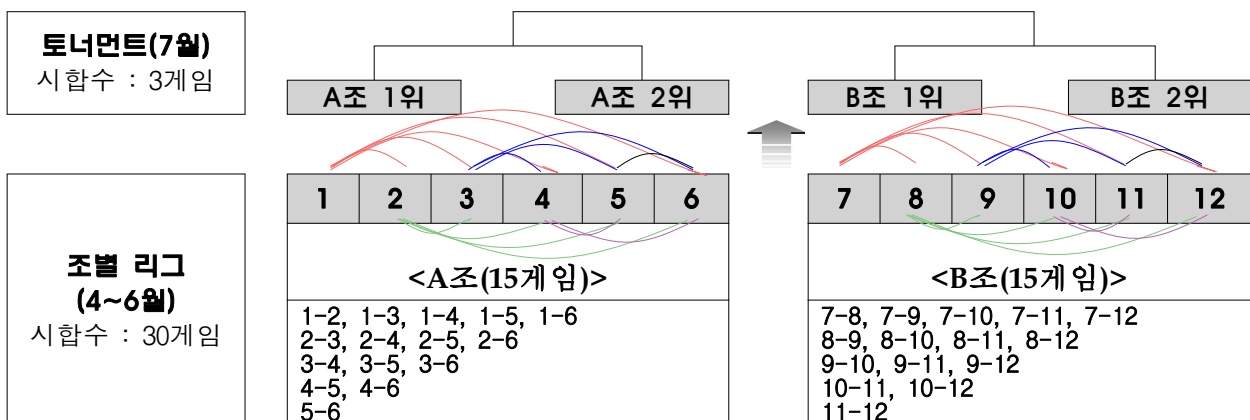
【우수사례 : 청원 내수중, '학교폭력추방 스포츠클럽' 운영】

- 6개 초등학교 출신 간 학생들의 갈등을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해소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09년)8건 → ('10년)5건 → ('11년) 1건
-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은 '폭력추방 서약서' 작성 의무화
- 선수 외에 학생들이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의 역할로 참여하여 경기를 통해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훈련

② 교육지원청 리그(토너먼트 방식 → 종목별/조별 리그 방식)

- 대회 기간 : (조별 리그) 4~6월, 2학기 9~10월 → (결승 토너먼트) 11월
- 경기 장소 : 리그전의 경우 Home & away 방식으로 운영 권장
- 운영 종목 :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구기 종목/팀 종목 중심)
 - ※ 시합 수 계산공식 : 토너먼트(n-1), 리그전($\frac{n(n-1)}{2}$) ※ n = 팀 수
- 주관/협조 : 교육지원청 / 체육단체(협회, 연합회),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
- 참가 대상 : 중학교 스포츠클럽(방과후학교 스포츠팀 포함)
 - '12년도 중학교 운영 후 초등학교('13), 고등학교('14)로 확대
- 참가선수 자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선수 미등록 학생, 해당 종목 협회 선수등록 말소 후 2년 이상 경과한 학생

<리그 대회 운영 방식(예시)>



참고자료

학생 체육활동 정책 관련 외국의 사례



선진 각국에서는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공동체(사회통합) 의식 제고 차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한 스포츠클럽 활동 전개

국가별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스포츠 소년단('62년 일본체육협회가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0팀, 학생 93만명, 지도자 19만명 등록 ○ (중·고) '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사의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 * 모든 중·고교에 운동부 설치되어 中 64.9%, 高 40.7%가 참여('09년) ○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415개('05) → 3,000개 확대 추진('0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교스포츠 프로그램(축구, 야구, 농구, 줄넘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율('07) : 23.9%(초; 24.1%, 중; 25.9%, 고; 21.6%) ○ 시즌별, 수준별 시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야구), 가을(미식축구), 겨울(농구) 등 - (高校) Varsity(상), Junior Varsity(중), 1st year(하)로 수준별 시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관리부 신설하고 '체력관리 장관(minister for fitness)' 임명('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스트푸드(Junk Food)와 청량음료에 대해 비만세(fat tax) 도입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활기찬 호주 만들기(Building a Healthy, Active Australia)"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지역사회 스포츠클럽(Active After-School Communities) : 유소년(5~12세)에게 매일 15~17시까지 스포츠 활동 참가 권장 * 매주 금~토요일에 학교별 스포츠클럽 실시,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일정, 장소, 경기결과 안내 / '세이트 클레이어 하이스쿨'(전교생 25% 자발적 참여) ○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 하루 전자매체 사용(컴퓨터 게임 등)은 2시간 이하로 줄인다.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는 좋은 학교를 만든다(Schulsport tut Schule gut)." - 학교·지역클럽 간의 연계, 학교스포츠 포상,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 : '16개 종목, 75,776팀, 825,806명 참가 ○ Bayern(바이에른)주, 'Sport nach 1'(오후 1시부터 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팀 116팀('91) → 2,215팀('07.10) ○ Golden Plan(사회체육) : 8만여개 스포츠클럽, 2,800만명 회원 보유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보건조례) 초·중·고 하루 1시간 체육 의무화('0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간 준수, 전교생 참여 운동회 개최(매년), 매일 30분 중간체조 실시 등

참고자료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① '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 초2~고3까지 전체 학생 6,529,821명 중 45.0%인 2,937,052명이 등록

※ '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 45.0%(초 62.1%, 중 40.7%, 고 25.7%)

※ 연도별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 17.1%('08) → 27.4%('09) → 37.6%('10) → 45.0%('11)

<'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11.12.1.)>

(명, 팀)

급별	학생 등록률			클럽수
	전체 학생수 (초2~고3)	등록 학생수 (초2~고3)	등록률(%)	
초	2,675,451	1,661,005	62.1%	46,884
중	1,910,572	777,318	40.7%	24,084
고	1,943,798	498,729	25.7%	15,786
계	6,529,821	2,937,052	45.0%	86,754

* 출처 : NEIS 내 학교스포츠클럽등록시스템('11.12.1. 기준)

② '11년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11.11월)

○ '11년도 참여 현황 : 총 500팀(초 164팀, 중 187팀, 고 149팀), 6,224명(초 1,973명, 중 2,408명, 고 1,843명) 참가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

(팀, 명)

종목별	초		중		고		계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축구	25	380	25	444	16	288	66	1,112
야구	7	96	11	177	8	138	26	411
농구	22	243	24	268	21	240	67	751
배구	8	130	16	215	14	210	38	555
배드민턴	27	209	29	236	29	252	85	697
소프트볼	4	61	11	188	5	82	20	331
탁구	27	224	22	180	22	183	71	587
핸드볼	18	248	10	132	11	106	39	486
피구	12	187	20	302	15	233	47	722
줄넘기	14	195	19	266	8	111	41	572
계	164	1,973	187	2,408	149	1,843	500	6,224

